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45-01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 보고서>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간 : 2012. 6. 8 ~ 2012. 11. 7

2012. 11. 24

연구기관명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서상택

공동연구자 : 전익수

연구원 : 김성섭

“ : 정우석

“ : 박부용

요 약 문

□ 농업회계기준의 필요성

-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자본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자금조달창구가 농협중심에서 일반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자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기업에게도 적용가능하게 됨. 농업부문에는 “농림어업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가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영체는 기존 K-GAAP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하에서 농업분야의 회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에 정책용역으로 마련한 농업회계기준의 정합성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그에 근거한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 농가에서는 아직도 농업회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회계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경영체 회계처리 현황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

-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법인경영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타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대부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반면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장부기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비율은 약 3.2%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영농일지나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었음.
- 충청지역(충북, 충남)과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마이스터대학 소속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회계처리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기록에

대한 필요성 미흡,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기록에 따른 혜택 미흡, 회계기록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프로그램 부족, 회계기록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활용 미흡, 회계장부 작성 교육의 현장성 및 실효성 부족, 세무사/회계사의 농업분야 활용 미흡,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제표 표준(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농림어업부문의 생물자산, 수확물,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산가치의 측정이 공정가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와 원가에 의한 측정이 병행되고 있음.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원가주의에 의한 자산가치의 측정이 이루어짐.
- 농업회계처리모범(례)는 종전 기업회계기준(K-GAPP)에서 정하지 않은 농업분야의 회계처리방법과 기준을 다루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그리고 법적 근거에 초점을 두고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검토하였음. 용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법적 근거는 최근의 법제(개)정 사례를 참조하여 수정하였음. 자산의 측정은 회계현실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가로 측정하도록 하였음.
- 농업재무제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생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음.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새롭게 정의된 용어로 일부 대체되었음.

□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 농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 제도화거나 모범(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농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방안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농업회계기준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제도화 방안은 한국회계기준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제도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범(례) 수준으로 활용하되 농업경영체

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설서 및 사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임.

- 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새로운 회계
기준 보급·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교육, 홍보, 체계적인 후속 조치 강구,
2)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정부 및 유관기관, 농협 등 금융기관, 교육기관, 회계업무기관), 3) 후속
연구과제의 추진 등.

Summary

Necessity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 o The demand for external funds has been increased with the progress of farm size and capitalization. In addition, financing channel in agricultural sector is being diversified from agricultural cooperative bank to commercial bank, which implies that farmers can access to commercial fund as well as agricultural fund.
- o Korea adopt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IFRS) is mandatory for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and can be applied to general corporate from 2011.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businesses Accounting Standards No. 1041" was enacted. Business entities not applied by Korea adopted IFRS can adopt the "Gen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stead of the existing K-GAAP. Therefore, th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need to be reviewed under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 o Farmers in general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or importance of agricultural accounting and knowledge necessary to the agricultural accounting.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hat farmers can accommodate the agriculture accounting standards.

Utilization and problem of agricultural accounting practice

- o Agricultural corporate controlled by outside auditing system report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Korea adopted IFRS or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to financial statements. Most agricultural corporation and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also make financial statements. Agricultural farmers, however, report financial statements only about 3.2% and largely make farming records and housekeeping books.

- o Trainees of Meister University in Chungcheong region (Chungbuk and Chungnam) and in the southern region of Kyunggi-do were surveyed. The lack of necessity, benefit, personal PC for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and accounting programs are common problems encountered by farmers in relation with agricultural accounting. In addition, a disconnection between the education for agricultural accounting and the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and the lack of accountants available for agricultural accounting were discovered as problems to be solved.

Validity of current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statements

- o Korea adopted IFRS and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clude biological assets, agricultural produce, and government subsid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 Korea adopted IFR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fair value basis and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fair value basis as well as cost basis. Small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measures the asset value with cost basis.
- o Previous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dealt with a method of accounting for agricultural sector not covered by K-GAAP. This study examines the consistency of previous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with Korea adopted IFRS and with legal relationship. We changed the terms to ensure the consistency with Korea adopted IFRS and law. The asset value is measured with cost basis by considering the accounting reality and the data availability.
- o Agricultural financial statements, depending on the size and nature of entity, include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statement of production cost, etc.

□ **Institutionalization and dissemination policies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Korea Accounting Institute or be utilized by farming sector in the form of casebook. In the former cas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institutionalized independently or can be incorporated into small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I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 canno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Korea Accounting Institut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eeds to utilize th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as a casebook that includes examples and explanations about the standards and crops so that farmers can utilize it easily.
- Dissemination policies of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education by related agencies, advertizing, and systematic follow-up actions taken for the dissemination and expans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2)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NACF, educational institutions, accounting services agency, etc) for the activation of accounting records, 3) follow-up research projects, etc.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II.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현황 분석	4
1.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처리 실태	4
2.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실태	5
3. 외감법 적용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 실태	6
III. 회계기록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8
1. 농가의 회계기록 실태 조사	8
2. 농가의 회계처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	27
IV.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31
1. 기업회계기준 분석	31
2.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분석	46
3. 기타 농업분야 적용중인 회계기준 분석	62
V. 농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표준에 대한 제안	69
1. 회계기준의 선택	69
2. 농업회계기준(안)	74
3. 농업재무제표(안)	111
VI.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118
1.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검토	118
2. 농업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	121
참고문헌	138
<부록> 회계처리방법 상세 비교	140

표 목 차

II.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현황 분석

<표 1>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장부 기록실태(최근 5년간)	4
<표 2> 회계장부 기록자가 이용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최근 5년간)	4
<표 3> 농업법인 현황	5
<표 4> 농업법인의 회계장부 작성 현황	6
<표 5> 농업분야 외감기업 회계처리 현황	7

III. 회계기록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표 6> 응답자들의 연령	8
<표 7> 응답자들의 영농경력	9
<표 8> 응답자들의 2011년도 조수입	9
<표 9> 응답자들의 작목 및 축종	10
<표 10> 회계기록 여부	11
<표 11> 회계 미기록 사유	11
<표 12> 영농형태별 회계기록 여부	11
<표 13> 회계기록 연수	12
<표 14> 회계기록 기록 주체	12
<표 15> 본인 및 가족 기록 시 어려운 점	12
<표 16> 회계기록 의뢰 외부인에 대한 만족도	13
<표 17> 회계기록 용도(복수 응답)	13
<표 18> 회계기록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여부	14
<표 19> 영농형태별 회계기록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여부	14
<표 20> 회계기록의 정부정책사업에서의 혜택 만족도	14
<표 21> 회계기록의 장부 형태	15
<표 22> 영농형태별 회계기록 장부 형태	15
<표 23> 경영기록장부에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16
<표 24> 회계장부 기록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	16
<표 25> 회계장부 작성의 정부정책사업에의 도움	17
<표 26>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장부 작성자의 혜택	18
<표 27> 최근 3년간 회계 관련 교육 여부	18

<표 28> 최근 3년간 회계 관련 교육 회수	19
<표 29> 농업인이 회계 관련 교육을 받는 기관(복수응답)	19
<표 30> 농업회계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20
<표 31> 농업회계 관련 교육의 불만족 사유	20
<표 32>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정책 선호도	21
<표 33>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법 선호도	22
<표 34> 농업회계전용 스마트폰(앱) 설치·활용 정책 선호도	23
<표 35>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 정책 선호도(전담요원을 배치·활용)	23
<표 36> 기관 선호도(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 배치·활용)	24
<표 37>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 대하여 들어보았는지 여부	25
<표 38>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교육 참여 의향	25
<표 39>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교육기관 선호도	25
<표 40>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필요성(회계사/세무사)	26
<표 41>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이유(회계사/세무사)	26
<표 42> 회계사/세무사들의 농업경영컨설팅 유용성	27

IV.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표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 범위	34
<표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용어 정의	34
<표 45>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7
<표 46> 생물자산의 분류 예시	37
<표 47>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38
<표 48> 생물자산의 분류 비교	39
<표 49>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 가치 측정	42
<표 50>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44
<표 5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자산 측정 방법	45
<표 52> 생물자산의 분류(모범(례))	53

V. 농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표준에 대한 제안

(별첨 1) 생산원가명세서	111
(별첨 2) 재무상태표	112
(별첨 3) 손익계산서	114

(별첨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16
(별첨 5) 결손금처리계산서	117

VI.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표 53>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2011년)	126
<표 54> 주요농업용 PC 프로그램	130
<부록> 회계처리방법 상세 비교	140

그림 목 차

IV.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그림 1> 생산과정의 회계처리 절차(출처 : 모범(례)) 59

VI.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그림 2> 회계기준의 수립을 위한 절차 119

<그림 3> 농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 120

<그림 4> 회계기준 정책적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 122

<그림 5> 회계기록 권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도 123

<그림 6> 농업인 회계장부 활용 체계도 124

<그림 7> 농업회계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 127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한국 농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소농경영체제였으나 국민소득의 향상, 농업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장지향적 상업농으로 전환되었음. 특히, 소비자의 고품질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농업 및 축산업의 발달이 두드러짐.
-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는 농업부문에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경영체의 출범을 가속화시켰음. 대표적인 것으로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과 농특세사업으로 10조원의 자금을 농업부문에 투입하였으며, 1991년부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출범시킴.
-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자본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자금조달창구가 농협중심에서 일반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자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자금공급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임. 이는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겠지만, 금융의 자원배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음.
- 1999년부터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종합자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대출조건으로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요구하고 있음. 2007년부터는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농가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임.

- 한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는 2010년부터 농림수산물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금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위험성이 높아 금융자금의 유치가 어려운 농업부문에 직접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농가의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서도 농가의 재무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농업법인과 3억원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축산농가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영체마다 회계처리방식이 제 각각이며, 회계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농업경영종합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회계교육이수나 회계장부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음.
- 2004년도에는 농업회계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용역이 실시되었음. 연구용역을 통해 「농업회계기준처리기준(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농업회계기준의 수립을 추진하였음. 농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내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물자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계정분류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비록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농업분야의 회계기준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에 「농업회계처리모범(례)해설」을 발간하여 농업부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회계처리지침을 보급하였음.
- 이처럼, 농업회계기준의 설정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과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회계기준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반 농가에서는 아직도 농업회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회계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기 발표된 농업회계기준의 활용도를 파악하고, 일반 농업인들이 농업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일반기업에게도 적용가능하게 됨. 농업부문에는 “농림어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가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영체는 기존 K-GAAP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하에서 농업분야의 회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에 정책용역으로 마련한 농업회계기준의 정합성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고, 그에 근거한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계기준의 확대 보급은 재무정보의 통일성, 투명성, 비교 가능성을 높여 외부 이해관계자의 농업분야 투자를 촉진시키며, 농업경영자로 하여금 경영개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농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표준에 대한 제안
- 농업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II.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현황 분석

1.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처리 실태

- 최근 5년간(2012년 7월 31일 기준) 농협은행에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184,855명이었으며, 이중 법인 신청자가 281명이 있음. 개인 신청자 중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27.7%였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89.7%였음. 개인 신청자는 대부분 회계장부를 기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법인 신청자는 대부분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었음.

<표 1> 농업종합자금 신청자의 회계장부 기록실태(최근 5년간)

품목	경영체 구분	신청자 수	작성안함	작성함
인원 (명)	계	184,855	133,492	51,363
	개인	184,574	133,463	51,111
	법인	281	29	252
비율 (%)	계	100	72.2	27.8
	개인	100	72.3	27.7
	법인	100	10.3	89.7

주) 이 자료는 5년간 연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농업경영체의 경우 중복 가능성이 있음.
자료 : 농협은행 내부자료(2012)

- <표 1>에서 회계기록을 하는 농업종합자금 신청자들이 이용하는 회계장부는 <표 2>와 같음. 개인의 경우 영농일지가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계부 25.4% > 비망기록 14.4% > 출납장 4.0% > 재무제표 3.2% 순이었음.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농일지 13.1% > 가계부 5.6% > 출납장 4.0% > 비망기록 0.8% 순이었음.

<표 2> 회계장부 기록자가 이용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최근 5년간)

품목	경영체 구분	회계 기록자수	가계부	재무제표	비망기록	영농일지	출납장
인원 (명)	계	51,363	12,996	1,847	7,348	27,107	2,065
	개인	51,111	12,982	1,654	7,346	27,074	2,055
	법인	252	14	193	2	33	10
비율 (%)	계	100	25.3	3.6	14.3	52.8	4.0
	개인	100	25.4	3.2	14.4	53.0	4.0
	법인	100	5.6	76.6	0.8	13.1	4.0

자료 : 농협은행 내부자료(2012)

2.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실태

○ <표 3>은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농업법인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2010년 기준 활동중인 농업법인은 총 8,361개소이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이 6,849개소(81.9%), 농업회사법인이 1,512개소(18.1%)임. 총 농업법인 중 농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농업생산법인은 3,112개소(37.2%)이며, 나머지는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영농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농업생산법인은 다시 영농조합법인 형태 2,633개소(84.6%)와 농업회사법인 형태 479개소(15.4%)로 구성됨. 대부분의 농업생산법인이 소규모 농가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형태임을 알 수 있음.

<표 3>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소)

조직 형태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농업생산	1,425	1,411	1,508	1,580	1,609	1,545	1,520	1,601	1,787	1,951	3,112
	가공판매	336	337	373	433	468	498	529	594	715	853	1,568
	유통판매	538	339	435	463	507	540	624	723	979	1,052	1,730
	농업서비스	795	633	561	450	355	326	312	305	310	352	613
	영농대행	-	519	448	343	266	238	226	211	213	220	369
	기타	272	426	542	516	591	640	672	685	687	694	1,338
계	3,366	3,146	3,419	3,442	3,530	3,549	3,657	3,908	4,478	4,902	8,361	
영농 조합 법인	농업생산	1,150	1,121	1,224	1,285	1,320	1,290	1,256	1,329	1,500	1,668	2,633
	가공판매	314	307	332	381	417	433	462	507	605	717	1,235
	유통판매	524	325	409	435	478	500	570	651	869	926	1,365
	농업서비스	190	188	186	172	147	140	152	178	201	249	477
	영농대행	-	83	85	69	61	57	68	88	115	140	269
	기타	250	407	502	473	535	595	626	632	620	617	1,139
계	2,428	2,348	2,653	2,746	2,897	2,958	3,066	3,297	3,795	4,177	6,849	
농업 회사 법인	농업생산	275	290	284	295	289	255	264	272	287	283	479
	가공판매	22	30	41	52	51	65	67	87	110	136	333
	유통판매	14	14	26	28	29	40	54	72	110	126	365
	농업서비스	605	445	375	278	208	186	160	127	109	103	136
	영농대행	-	436	363	274	205	181	158	123	98	80	100
	기타	22	19	40	43	56	45	46	53	67	77	199
계	938	798	766	696	633	591	591	611	683	725	1,512	

주) 법인수 : 2001~2009년 : 지사 또는 지점 제외

자료 : 농어업법인조사(통계청)

- <표 4>는 농업법인의 회계장부 작성 현황을 보여 줌. 2010년도 총 8,361개의 농업법인 중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이 7,009개소로 전체의 83.8%수준임. 간이기장을 포함한 미작성은 전체 농업법인의 16.2%수준임. 영농조합법인은 총 6,849개소 중 82.9%인 5,675개소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총 1,512개소 중 88.2%인 1,334개소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보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 농업법인의 회계장부 작성 현황

(단위 : 개소)

조직형태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결산서	1,521	1,557	1,787	1,914	2,130	2,180	2,381	2,597	3,075	3,467	7,009
	간이기장	1,392	832	851	802	701	626	614	655	607	561	0
	미작성	453	748	769	726	694	736	656	650	780	866	1,352
	계	3,366	3,137	3,407	3,442	3,525	3,542	3,651	3,902	4,462	4,894	8,361
영농 조합 법인	결산서	1,249	1,323	1,530	1,650	1,853	1,905	2,058	2,227	2,610	2,920	5,675
	간이기장	929	566	616	590	539	493	480	538	507	484	0
	미작성	250	456	501	506	504	555	526	529	670	770	1,174
	계	2,428	2,345	2,647	2,746	2,896	2,953	3,064	3,294	3,787	4,174	6,849
농업 회사 법인	결산서	272	234	257	264	277	275	323	370	465	547	1,334
	간이기장	463	266	235	212	162	133	134	117	100	77	0
	미작성	203	292	268	220	190	181	130	121	110	96	178
	계	938	792	760	696	629	589	587	608	675	720	1,512

주) 법인수 : 2001~2009년 : 지사 또는 지점 제외, 미작성(2010년) : 간이기장을 작성하는 법인은 회계장부 미작성 법인에 포함.

자료 : 농어업법인조사(통계청)

3. 외감법 적용 농업법인경영체 회계처리 실태1)

- <표 5>는 2011년말 기준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농관련기업(외감기업) 중 농업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 기업들의 회계처리 현황을 보여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한 농업분야 기업체는 총 59개소이며, 이 중 축산업이 37개소로 가장 많

1) 외감법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말함.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외감기업'이라 함.

왔고, 작물재배업 16개소, 기타 농업 5개소,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1개소 있음.

-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명시한 곳이 31개소(52.5%)로 가장 많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명시한 곳이 17개소(28.8%), GAAP 2개소, 명시되지 않은 곳이 9개소 있음.

<표 5> 농업분야 외감기업 회계처리 현황

소분류	회계기준	개소수
작물재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일반기업회계기준	8
	기타	6
	소계	16
축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3
	일반기업회계기준	22
	GAAP	2
	소계	37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기타 농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기타	3
	소계	5
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7
	일반기업회계기준	31
	GAAP	2
	기타	9
	소계	59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III. 회계기록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 농가의 회계기록 실태 조사

가. 농업인 조사개요 및 응답자 현황

1) 조사개요

- 충청지역(충북, 충남)과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소속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회계처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한우반, 사과반, 포도반, 인삼반, 시설채소반, 시설화훼반에 소속되어 있었음. 조사는 2012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간 수행됨.
- 설문 참여자는 총 90명이었으며, 공개 설명 및 직접 상담을 통한 조사로 회수율은 100%였음. 조사내용에는 영농현황, 회계기록 실태, 회계기록의 유용성, 교육,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었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내용도 함께 조사함.

2) 응답자 현황

- 설문 조사에 응한 대상자의 연령대는 평균 54.8세로 30대가 4명(4%), 40대가 17명(19%), 50대가 51명(57%), 60대가 15명(17%), 70대가 3명(3%)으로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구조²⁾에 비해 50대 이하의 농가가 많은데, 이는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을 보여줌.

<표 6> 응답자들의 연령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빈도(명)	4	17	51	15	3	90
비율	4.40%	18.90%	56.70%	16.70%	3.30%	100.00%

2) 2010년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구성비는 15세-29세가 2%, 30대가 4.5%, 40대가 12.8%, 50대가 24.9%, 60세 이상이 55.9%로 나타남(농림수산물주요통계 2011). 취업자는 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영농경력은 평균 21.2년으로³⁾ 10년 미만이 13명(14%), 10~19년이 29명(32%), 20~29년이 24명(27%), 30년 이상이 23명(26%)으로 30년 이상된 경력자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10년 이상된 경력자들의 다른 구간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표 7> 응답자들의 영농경력

구분	빈도	비율
10년 미만	13	14.4%
10 ~19	29	32.2%
20 ~29	24	26.7%
30년 이상	23	25.6%
미기재	1	1.1%
합계	90	100.0%

- 학력은 중졸 이하가 20명(22%), 고졸이 48명(53%), 대졸이 20명(22%), 대학원졸업이 1명(1%)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보유현황은 보유가 72명(80%), 미보유가 18명(20%)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농현황은 전업농이 75명(83%), 겸업농이 15명(17%)이며, 2011년도 기준 농산물 총 판매액(조수입)은 1억원 ~1억 5천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2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천만원 ~7천 5백만원 미만이 21명(23%), 7천 5백만원 ~ 1억원 미만과 2천 5백만원 미만이 각각 14명(14%), 2억원 이상이 9명(10%), 2천 5백만원 ~ 5천만원 미만이 7명(8%), 1억 5천만원 ~2억원 미만이 4명(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응답자들의 2011년도 조수입

구분	빈도	비율
2천 5백만 원 미만	13	14.4%
2천 5백만 원 ~ 5천만 원 미만	7	7.8%
5천만 원 ~ 7천 5백만 원 미만	21	23.3%
7천 5백만 원 ~ 1억 원 미만	13	14.4%
1억 원 ~1억 5천만 원 미만	23	25.6%
1억 5천만 원 ~2억 원 미만	4	4.4%
2억 원 이상	9	10.0%
합계	90	100.0%

3) 미기재자 1명을 제외

- 주요 작목 및 축종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작물생산이 83명(80%), 축산이 21명(20%)으로 나타났고, 작물과 축산을 복수로 생산하는 농업인이 14명(14%)이었음. 작물생산 농가는 과수작목(노지 및 시설 합계 22.1%)과 채소작목(노지 및 시설 합계 21.1%) 및 시설화훼작목(15.4%)이 주를 이루었고, 수도작(9.6%)과 특작(노지 및 시설 합계 9.6%)이 다음 순이었고, 축산 농가는 한우 및 육우가 14명(13.5%), 양돈이 7명(6.7%)으로 나타남.

<표 9> 응답자들의 작목 및 축종

구분		빈도(명)	비율
작목	수도작	10	9.6%
	노지과수	15	14.4%
	노지채소	5	4.8%
	노지화훼	0	0.0%
	노지특작	6	5.8%
	노지전작	2	1.9%
	시설과수	8	7.7%
	시설채소	17	16.3%
	시설화훼	16	15.4%
	시설특작	4	3.9%
(소계)		(83)	(79.8%)
축산	한우 및 육우	14	13.5%
	양돈	7	6.7%
	(소계)	(21)	(20.2%)
합계		104	100.0%

주) 복합경영으로 작목과 축산을 복수로 경영하는 응답자가 14명으로 작목과 축산으로 구분하면 총 응답자 90명에 14명이 더해진 104명으로 표기됨.

나. 설문내용 분석

1) 회계기록 여부 및 이유

- 현재 회계기록 여부를 묻는 질문에 50명(56%)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40명(44%)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회계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4명(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어서'가 12명(30%), '기록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9명(23%), '기록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가 4명(10%) 순으로 각각 나타남.

4) 14명의 복합경영농가의 작목 분포를 보면, 수도작이 9명, 과수가 1명, 전작이 2명, 시설채소가 2명으로 나타났음. 이들 농가의 축종은 한우 및 육우가 13농가이고, 양돈이 1농가였음.

<표 10> 회계기록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기록	50	55.6%
미기록	40	44.4%
합계	90	100.0%

<표 11> 회계 미기록 사유

구분	빈도	비율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	35.0%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어서	12	30.0%
기록할 시간이 부족해서	9	22.5%
기록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4	10.0%
기타	1	2.5%
합계	35	100.0%

- 영농형태별 회계기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작물농가중 기록자는 43명(52%), 작물농가중 미기록자는 40명(48%), 축산농가중 기록자는 14명(67%), 축산농가중 미기록자는 7명(33%), 작물과 축산을 모두 주요작물로 기록한 복합농가들에 대해서 기록자는 7명(50%), 미기록자 7명(50%)으로 나타남. 영농형태(작물/축산)와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영농형태별 회계기록 여부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작물 농가	43	51.8%	40	48.2%	83	100.0%
축산 농가	14	66.7%	7	33.3%	21	100.0%
중복 농가*	7	50.0%	7	50.0%	14	100.0%
합계	50	55.6%	40	44.4%	90	100.0%

* 중복농가는 작물과 축산을 복수로 경영하는 14명의 복합농가로 회계장부 기록자/미기록자 합계 계산 시 이중으로 카운팅 된 중복 농가는 제외.

- 5) 영농형태(작물/축산)가 회계장부 기록과 미기록 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2.48, Degrees of Freedom=1, p-value=0.116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회계기록 기록 연수 및 형태

- 회계기록 기록 연수는 5~9년이 17명(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이 15명(30%), 10~19년이 11명(22%), 20년 이상이 7명(14%)으로 나타남.

<표 13> 회계기록 연수

구분	5년 미만	5 ~ 9년	10 ~ 19년	20년 이상	합계
빈도(명)	15	17	11	7	50
비율	30.00%	34.00%	22.00%	14.00%	100.00%

-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주체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39명(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5명(10%), 배우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5명(10%), 기타의 경우가 1명(2%)으로 나타남.

<표 14> 회계기록 기록 주체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외부인	기타	합계
빈도(명)	39	5	0	5	1	50
비율	78.00%	10.00%	0.00%	10.00%	2.00%	100.00%

- 회계기록을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자녀)이 작성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음'이 16명(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계지식이 부족함'이 11명(25%), '기록할 시간이 부족함'이 10명(23%)이고, '원하는 회계기록장부가 없음'이 3명(7%), '기록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움'이 2명(5%), 기타가 1명(5%)순으로 나타남.

<표 15> 본인 및 가족 기록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비율
회계지식이 부족함	11	25.0%
기록할 시간이 부족함	10	22.7%
기록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움	2	4.5%
원하는 회계장부가 없음	3	6.8%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음	16	36.4%
기타	2	4.5%
합계	44	100.0%

- 회계기록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사/세무사에 100%(5명)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 + 만족)이 60%(3명), 보통이 40%(2명)로 나타남.

<표 16> 회계기록 의뢰 외부인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1	20.0%
만족	2	40.0%
보통	2	40.0%
불만족	0	0.0%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5	100.0%

3) 회계기록의 용도 및 정부정책사업에서의 혜택

- 회계기록 용도로는 '월말이나 연말에 집계하여 수지타산을 계산하는데 활용'한다는 답변이 34명(36%), '농작업 시기에 구매한 물품 등을 통해 필요한 작업내용을 확인하는데 활용'한다는 답변이 32명(34%)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 보조 사업, 금융기관 대출, 친환경 인증 등을 신청하는데 활용'이 14명(15%), '세금 신고를 하는데 활용'이 8명(9%) 순으로 나타났고,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명(4%)으로 나타남.

<표 17> 회계기록 용도(복수 응답)

구분	빈도	비율
거의 활용하지 않음	4	4.3%
월말이나 연말에 집계하여 수지타산을 계산하는데 활용	34	36.2%
정부 보조 사업, 금융기관 대출, 친환경 인증 등을 신청하는데 활용	14	14.9%
세금신고를 하는데 활용	8	8.5%
농작업 시기에 구매한 물품 등을 통해 필요한 작업내용을 확인하는데 활용	32	34.0%
기타	2	2.1%
합계	69	100.0%

- 회계기록 용도 중 정부정책사업(정부 보조 사업, 금융기관 대출, 친환경 인증 등)에서 가산점을 포함하여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없다'가 34명(68%), '있다'가 16명(32%)으로 정부정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음. 영농형태(작물/축산)와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여부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명목상 축산농가 중 정부정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농가(50%)가 작물생산농가(3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교차분석 결과 영농형태에 따라 혜택을 받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것임.

<표 18> 회계기록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	16	32.0%
혜택을 받는 적이 없다	34	68.0%
합계	50	100.0%

<표 19> 영농형태별 회계기록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여부

구분	혜택		미혜택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작물 농가	13	30.2%	30	69.8%	43	100.0%
축산 농가	7	50.0%	7	50.0%	14	100.0%
중복 농가*	4	57.1%	3	42.9%	7	100.0%
합계	16	32.0%	34	68.0%	50	100.0%

* 중복농가는 작목과 축산을 복수로 경영하는 14명의 복합농가 중 회계기록을 하는 7농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혜택/미혜택의 합계 계산 시 이중으로 카운팅 된 이들 농가 수는 제외

- 또한 정부정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농가들의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 만족)이 25%(4명), 보통이 63%(10명), 불만(매우 불만 + 불만)이 13%(2명)로 나타나 대체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표 20> 회계기록의 정부정책사업에서의 혜택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빈도(명)	1	3	10	1	1	16
비율	6.30%	18.80%	62.50%	6.30%	6.30%	100.00%

- 6) 영농형태(작물/축산)가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 정책사업의 혜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1.49, Degrees of Freedom=1, p-value=0.22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4) 회계기록 장부 형태

- 회계기록을 위한 장부 형태는 경영기록장부가 19명(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노트나 메모장과 가계부 또는 출납장이 각각 13명(26%), 기타가 4명(8%), 생육관리카드가 1명(2%)으로 나타났음.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작물생산농가에서는 일반노트나 메모장이 37%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면, 축산농가에서는 가계부 또는 출납장이 50%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회계기록의 장부 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달력	0	0.0%
일반노트나 메모장	13	26.0%
가계부 또는 출납장	13	26.0%
경영기록장부	19	38.0%
농업용 PC프로그램	0	0.0%
생육관리카드	1	2.0%
기타	4	8.0%
합계	50	100.0%

<표 22> 영농형태별 회계기록 장부 형태

구분	달력	일반 노트나 메모장	가계부 또는 출납장	경영 기록 장부	농업용 PC 프로그램	생육 관리 카드	기타	전체
작물농가	0 0.0%	13 30.2%	8 18.6%	18 41.9%	0 0.0%	1 23%	3 7.0%	43 100.0%
축산농가	0 0.0%	1 7.1%	7 50.0%	4 28.6%	0 0.0%	0 0.0%	2 14.3%	14 100.0%
중복농가	0 0.0%	1 14.3%	2 28.6%	3 42.9%	0 0.0%	0 0.0%	1 14.3%	7 100.0%
전체	0 0.0%	12 31.6%	9 23.7%	13 34.2%	0 0.0%	1 2.6%	3 7.9%	50 100.0%

* 중복농가는 작목과 축산을 복수로 경영하는 14명의 복합농가 중 회계기록을 하는 7농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회계장부형태 전체 계산 시 이중으로 카운팅 된 이들 농가 수는 제외.

- 작물농가와 축산농가를 합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영기록장부에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수익, 비용 등)가 47%(9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 항목 21%(4명), 자본 항목 16%(3명)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르겠다는 농가도 11%(2명)나 되었음.

<표 23> 경영기록장부에서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자산 항목	4	21.0%
부채 항목	0	0.0%
자본 항목	3	15.8%
손익계산서(수익, 비용 등)	9	47.4%
전혀 모르겠음	2	10.5%
기타	1	5.3%
합계	19	100.0%

5) 회계기록의 유용성

-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활용하는 것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0명(90%)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됨 + 도움이 됨)고 답하고, 4명(5%)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도움이 안 됨 + 전혀 도움이 안 됨)고 답해,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농가나 기록하지 않는 농가나 모두 회계기록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특히,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들도 회계장부 기록이 영농활동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90%)고 생각하고 있어, 회계장부 기록에 대한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4> 회계장부 기록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됨	15	30.0%	10	25.0%	25	28.9%
도움이 됨	29	58.0%	26	65.0%	55	61.1%
보통	4	10.0%	2	5.0%	6	6.7%
도움이 안 됨	0	0.0%	2	2.5%	2	2.2%
전혀 도움이 안 됨	1	2.0%	1	2.5%	2	2.2%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7) 이 후의 조사 내용은 회계장부 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에게 조사한 항목들임.

- 회계장부 작성이 정부정책사업(자금)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도움이 안 됨 + 도움이 안 됨)가 33명(37%)으로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됨 + 도움이 됨)의 27명(30%)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참여의 도움 정도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⁸⁾.
- 특히, 현재 회계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자들은 정부정책사업에 부정적인 견해(전혀 도움이 안 됨 + 도움이 안 됨)가 50%(25명)로 긍정적인 견해(매우 도움이 됨 + 도움이 됨)의 24%(12명)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회계장부 미기록자들은 긍정적인 견해가 38%(15명)로 부정적인 견해의 20%(8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회계장부 기록자들의 실제적인 체감과 회계장부 미기록자들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표 25> 회계장부 작성의 정부정책사업에의 도움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됨	0	0.0%	2	5.0%	2	2.2%
도움이 됨	12	24.0%	13	32.5%	25	27.8%
보통	13	26.0%	17	42.5%	30	33.3%
도움이 안 됨	18	36.0%	6	15.0%	24	26.7%
전혀 도움이 안 됨	7	14.0%	2	5.0%	9	10.0%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 정부정책사업(자금) 참여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경우의 혜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확대(매우 확대 +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명(84%)으로 현행 유지(12명, 13%)나 축소(2명, 2%) 의견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줌. 특히,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은 회계장부 미기록자(83%)에 비해 회계장부 기록자(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⁹⁾.

-
- 8) 회계장부 기록여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참여의 도움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 유의수준 5%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10.37, Degrees of Freedom=4, p-value=0.034로 회계장부 기록자와 미기록자 간에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참여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9) 회계장부 기록여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혜택 확대/축소 정도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나는지 5% 유의수준으로 교차분석한 결과, χ^2 -statistic=8.08, Degrees of Freedom=3, p-value=0.044로 회계장부 기록자와 미기록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장부 작성자의 혜택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확대	14	28.0%	4	11.4%	18	20.0%
확대	30	60.0%	28	71.4%	58	64.4%
현행유지	4	5.3%	8	17.1%	12	13.3%
축소	2	5.3%	0	0.0%	2	2.2%
매우 축소	0	0.0%	0	0.0%	0	0.0%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6) 회계관련 교육

- 최근 3년간 회계관련 교육(농업부기나 농업회계, 경영기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6명(62%)이 교육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34명(38%)이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회계관련 교육의 여부와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⁰⁾.

<표 27> 최근 3년간 회계 관련 교육 여부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교육받은 적이 있다	31	62.0%	25	62.5%	56	62.2%
교육받은 적이 없다	19	38.0%	15	37.5%	34	37.8%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 또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의 최근 3년간 평균 회수는 3.5번으로 나타났는데, 1회 ~ 2회가 27명(48%)으로 가장 많고, 다음 순으로 3회~4회와 5회 ~ 6회가 각각 12명(21%), 7회 이상이 5명(9%)으로 나타났음.

10) 회계관련 교육의 여부가 회계장부 기록과 미기록 간의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0.002, Degrees of Freedom=1, p-value=0.96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대로, 회계장부 기록여부가 회계관련 교육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표 28> 최근 3년간 회계 관련 교육 회수

구분	1 ~ 2회	3 ~ 4회	5 ~ 6회	7회 이상	합계
빈도	27	12	12	5	56
비율	48.20%	21.40%	21.40%	8.90%	100.00%

- 농업인들이 회계 관련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 대학이 28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기관이 17명(21%), 진흥청 관련 기관이 15명(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10명(12%) 순으로 나타남.

<표 29> 농업인이 회계 관련 교육을 받는 기관(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대학	28	34.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10	12.3%
농협	4	4.9%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5	18.5%
경영컨설팅업체	7	8.6%
기타	17	21.0%
합계	81	100.0%

- 최근에 받은 농업부기나 농업회계, 경영기록 등 농업회계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 만족)이 24명(43%), 보통이 26명(46%), 불만족이 6명(11%)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 회계 관련 교육 만족도와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¹⁾. 또한, 회계 관련 교육에 불만족(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이유로는 '실제 농업경영에서의 활용도가 낮아서'가 50%(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너무 높고 어려워서'가 33%(2명), 기타 이유가 17%(1명) 순으로 나타남.

11) 회계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회계장부 기록과 미기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2.83 Degrees of Freedom=3, p-value=0.418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대로, 회계장부 기록여부가 회계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표 30> 농업회계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0	0.0%	1	4.0%	1	1.8%
만족	13	41.9%	10	40.0%	23	41.1%
보통	16	51.6%	10	40.0%	26	46.4%
불만족	2	6.5%	4	16.0%	6	10.7%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합계	31	100.0%	25	100.0%	56	100.0%

<표 31> 농업회계 관련 교육의 불만족 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실제 농업경영에서의 활용도가 낮아서	3	50.0%
새로운 교육 내용이 없어서	0	0.0%
교육수준이 너무 높고 어려워서	2	33.3%
교육 횟수가 너무 많고 교육시간이 너무 길어서	0	0.0%
기타	1	16.7%
합계	6	100.0%

7)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정책

- 정부가 회계장부의 기록을 권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1순위로 ‘개인PC용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27명(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기록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이 23명(26%), ‘경영기록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지원’이 18명(20%) 순으로 나타남.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정책들 선호도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¹²⁾.

12)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1.84, Degrees of Freedom=5, p-value=0.87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반대로 정부의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가 회계장부 기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표 32> 회계장부 기록 권장을 위한 정책 선호도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영기록 우수농가의 포상제도	3	6.0%	5	12.5%	8	8.9%
경영기록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우선지원	12	24.0%	11	27.5%	23	25.6%
기록관리 전문업체 (컨설팅업체)의 선정/지원	5	10.0%	3	7.5%	8	8.9%
경영기록 및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지원	11	22.0%	7	17.5%	18	20.0%
개인PC용 경영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5	30.0%	12	30.0%	27	30.0%
경영기록장부의 개발/보급	4	8.0%	2	5.0%	6	6.7%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교육을 이수한 후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64명(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개별농가가 종이로 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월별(분기, 반기별)로 시군센터로 송부하여 담당센터직원이 일괄 입력 및 관리’하는 방법이 12명(13%), ‘작목반 등 소규모 마을이나 리 단위 조직을 통하여 담당자 선발 후 담당자를 통한 입력 및 관리’ 방법이 8명(9%) 순으로 나타남.
-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법 선호도 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¹³⁾.

13)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법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3.26, Degrees of Freedom=4, p-value=0.515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법 선호도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관련 회계교육을 이수한 후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36	72.0%	28	70.0%	64	71.1%
개별농가가 종이로 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월별(분기, 반기별)로 시군센터로 송부하여 담당센터직원이 일괄 입력 및 관리	7	14.0%	5	12.5%	12	13.3%
위탁업체(회계법인이나 정부 인증·지정한 기관)를 이용한 위탁관리	1	2.0%	3	7.5%	4	4.4%
작목반 등 소규모 마을이나 리 단위 조직을 통하여 담당자 선발 후 담당자를 통한 입력 및 관리	4	8.0%	4	10.0%	8	8.9%
기타	2	4.0%	0	0.0%	2	2.2%
합계	38	100.0%	35	100.0%	90	100.0%

-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매우 좋음 + 좋음)고 보는 응답자가 66명(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좋지 않다(매우 좋지 않음 + 좋지 않음)고 보는 응답자는 11명(11%)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 설치·활용에 대한 선호도와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의 상호 영향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음¹⁴⁾.

14)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 설치·활용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2.19, Degrees of Freedom=4, p-value=0.7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농업회계전용 스마트폰(앱) 설치·활용 정책 선호도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좋음	12	24.0%	8	20.0%	20	23.3%
좋음	26	52.0%	20	50.0%	46	50.7%
보통	8	16.0%	5	12.5%	13	15.1%
좋지 않음	3	6.0%	6	15.0%	9	11.0%
매우 좋지 않음	1	2.0%	1	2.5%	2	0.0%
합계	38	100.0%	35	100.0%	73	100.0%

-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인근 지역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좋다(매우 좋음 + 좋음)고 보는 응답자가 76명(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좋지 않다(매우 좋지 않음 + 좋지 않음)고 보는 응답자는 1명(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인근 지역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의 상호 영향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음¹⁵⁾.

<표 35>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 정책 선호도(전담요원을 배치·활용)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좋음	8	16.0%	14	35.0%	22	24.4%
좋음	32	64.0%	22	55.0%	54	60.0%
보통	9	18.0%	4	10.0%	13	14.4%
좋지 않음	1	2.0%	0	0.0%	1	1.1%
매우 좋지 않음	0	0.0%	0	0.0%	0	0.0%
합계	38	100.0%	35	100.0%	73	100.0%

15)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인근 지역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5.37, Degrees of Freedom=3, p-value=0.147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어느 기관에 배치되어 있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39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위농협이 35명(39%), 지역대학이 7명(8%), 경영컨설팅업체가 5명(6%) 순으로 나타남.
-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배치할 기관에 대한 선호도와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의 상호 영향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음¹⁶⁾.

<표 36> 기관 선호도(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 배치·활용)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역대학	2	4.0%	5	12.5%	7	7.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1	2.0%	2	5.0%	3	3.3%
단위농협	21	42.0%	14	35.0%	35	38.9%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23	46.0%	16	40.0%	39	43.3%
경영컨설팅업체	2	4.0%	3	7.5%	5	5.6%
기타	1	2.0%	0	0.0%	1	1.1%
합계	50	100.0%	40	100.0%	73	100.0%

8)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및 관련교육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인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74명(82%)의 응답자가 들어본 적이 없고, 16명(18%)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함. 회계장부 기록 여부와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 대한 사전인식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⁷⁾.

16)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농업회계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담요원을 배치할 인근지역 기관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4.41, Degrees of Freedom=5, p-value=0.49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17) 회계장부 기록 여부가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들어보았는지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5% 유의수준의 교차분석 결과 χ^2 -statistic=2.56, Degrees of Freedom=1, p-value=0.109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 대하여 들어보았는지 여부

구분	회계장부 기록자		회계장부 미기록자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들어 보았다	6	12.0%	10	25.0%	16	17.8%
들어보지 못했다	44	88.0%	30	75.0%	74	82.2%
합계	50	100.0%	40	100.0%	90	100.0%

-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81명(90%)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9명(10%)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함.

9) 복식부기 및 회계기록을 외부에 위탁하는 농업인들의 인식

-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을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 교육에 참여할 의향에 대하여 '참여 하겠다'(적극 참여 + 참여)는 의견이 14명(88%), '참여하지 않겠다'(적극 불참 + 불참)는 의견이 1명(7%)으로 나타남.

<표 38>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교육 참여 의향

구분	적극 참여	참여	보통	불참	적극 불참	합계
빈도	5	9	1	1	0	16
비율	31.25%	56.25%	6.25%	6.25%	0.00%	100.00%

-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을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8명(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대학이 4명(29%)로 나타났고, 농정원과 단위농협이 각각 1명(7%)이었고, 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응답자가 없었음.

<표 39>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 작성 교육기관 선호도

구분	빈도	비율
지역대학	4	28.6%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1	7.1%
단위농협	1	7.1%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8	57.1%
경영컨설팅업체	0	0.0%
기타	0	0.0%
합계	14	100.0%

-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새로운 농업회계기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고 보는 응답자가 12명(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통'이 3명(19%),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명(6%)임.

<표 40>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필요성(회계사/세무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	3	9	3	1	0	16
비율	18.80%	56.00%	18.80%	6.40%	0.00%	100.00%

-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회계사/세무사에 대해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해 잘 몰라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 6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부문의 회계와 세무업무는 회계사/세무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5명(42%)으로 나타났고, '회계사/세무사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재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은 1명(8%)이었음.

<표 41>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이유(회계사/세무사)

구분	빈도	비율
농업에 대해 잘 몰라 자의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	6	50.0%
농업부문의 회계와 세무업무는 회계사/세무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5	41.7%
회계사/세무사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재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	8.3%
기타	0	0.0%
합계	12	100.0%

-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들이 농업경영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매우 도움됨 + 도움됨)는 의견이 9명(56%)으로 가장 많았으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매우 도움이 안됨 + 도움이 안됨)는 의견도 5명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함.

<표 42> 회계사/세무사들의 농업경영컨설팅 유용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	12.5%
도움이 될 것이다	7	43.8%
보통	2	12.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31.2%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0.0%
합계	16	100.0%

-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들의 농업경영 컨설팅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5명, 100%)가 ‘회계사/세무사가 농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이유로 지목함.

2. 농가의 회계처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

가. 회계기록에 대한 필요성 미흡

- 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의 주된 이유로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3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회계기록의 유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러나 회계장부 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회계기록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89%)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잠재적인 수요(필요)가 행동(회계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나.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기록에 따른 혜택 미흡

- 정부가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음. 특히, 현재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농가들은 회계장부 작성이 정부정책사업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50%)가 긍정적인 견해(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 필요.

-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회계장부 기록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84%)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회계기록자들(88%)의 요구는 미기록자들(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정부가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기 위해 실시해야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경영기록자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이 두 번째(26%)로 많은 의견을 차지하였음.

다. 회계기록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 부족

- 현재 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은 주된 이유로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어서'를 두 번째(30%)로 많이 선택했는데, 이를 볼 때 농업인들의 회계지식과 시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함.
- 이러한 농업용 회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현재 회계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뿐 아니라 현재 회계기록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음.
- 회계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정부가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해야할 정책으로 '개인 PC용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30%) 가장 많이 선호. 또한, 농업용 회계 프로그램 개발시 농업인들의 기대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회계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회계장부 작성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 및 경영분석도 쉽게 해 볼 수 있도록 경영분석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라.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 미흡

-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기록할 시간이 부족해서'가 23%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농가들도 회계기록 작성 시 어려움으로 '시간부족'을 상당히 많이 (23%)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회계기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야하나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함.
-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74%)의 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표시한 만큼, 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폰을 통한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성과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별도로 다른 기록부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음.

마. 회계장부 작성 교육의 현장성 및 실효성 부족

- 지금껏 농업인들이 받은 회계 관련 교육으로 인해 회계 기록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분석(교차분석) 결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 관련 교육이 회계장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는 부족함을 시사함.
- 회계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인 회계장부 작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 특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용 PC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농가들(71%)이 '관련 회계교육을 이수한 후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타인이 대신해 주는 다른 방법들(29%)보다 선호하고 있는 점을 비취볼 때, 관련 회계 교육시 컴퓨터를 직접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

바. 세무사/회계사의 농업분야 활용 미흡

-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농업경영컨설팅에 활용하는 정도가 미흡함.
-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들이 관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농업인들(56%)도 상당함.

- 물론, 이들 회계사/세무사들이 농업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사.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인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82%)를 차지하고 있음. 현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정립하여 보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이들 회계사/세무사는 농업분야에 대해 잘 몰라 자의적으로 작성할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들의 염려가 많은 만큼, 회계업무의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필요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음(회계법인의 반응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사례조사 보강).

IV. 현행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 분석

1. 기업회계기준 분석¹⁸⁾

가. 기업회계기준의 농림어업분야 기준 제정 배경 및 경과

1)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

- 1973년에 설립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은 EU,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0여개국에서 채택하여 의무적으로 적용 또는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으로 정착되는 추세에 있음. 독자적 회계기준을 유지할 경우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선택적 적용이 허용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됨.
- 농림어업분야는 전통적으로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 요구가 많지 않았음.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 및 농수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농림어업활동의 규모, 범위, 상업성이 확대되고, 외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농림어업분야에서 통일된 기준의 재무제표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1994년에 농림어업에 관한 과제를 의제로 추가하였음. IASC는 1996년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공개초안 제65호(E65) '농림어업(Agriculture)'을 승인하였으며, 다시 농림어업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12월에 IAS 41을 승인함. 승인된 IAS 41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18)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자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2) 농림어업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 우리나라는 1958년 6월 재정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 과 「재무제표규칙」 을 공표함. 1981년 12월 증권관리위원회가 법조문 형식의 「기업회계기준」 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 12월까지 미국회계기준(US GAAP) 등을 반영하여 8차례 개정함.
- 1998년 12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과 합치시키라는 IMF와 IBRD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함. 2000년 7월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독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2000년 8월 기업회계기준서 전문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까지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하여 28개 기준서를 제정하여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을 대체함.
-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는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에 대응하는 기준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는 2007년 11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11월 28일에 개정된 바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 제41호를 준수하는 것이 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음. 이 기준은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은 2009년 11월 27일 제정, 2010년 10월 8일 개정되었으며, 적용범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와 동일함.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41호 '농림어업'¹⁹⁾

1) 회계기준의 구성 및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에 대응되는 기준임. 이 기준서는 2011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은 목적, 적용,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인식과 측정, 정부보조금, 공시, 시행일과 경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함.

2) 적용범위

- 이 기준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 정부보조금에 적용함.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와 무형자산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음.
- 이 기준서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 수확시점에만 적용함. 수확시점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
-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로 정리되어 있음. 따라서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음.

<표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 범위

대상 활동	적용 범위	비 고
농림어업활동	생물자산	-
	수확물	· 수확시점에만 적용 · 그 이후에는 재고자산 등 적용
	정부보조금	·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

3) 용어의 정의

○ 농림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표 44>와 같음.

<표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 의
농림어업 관련 용어	(1)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2)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3)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과정의 중지
	(4)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5)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6)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7)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정으로 구성됨.
일반적인 용어	(1)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2) 장부금액	채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금액
	(3)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주) 당초(2007.11.23)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었음. 새롭게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농림어업활동은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채소 및 과수 재배, 화훼 재배, 가축사육, 조림, 양식(양어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함.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1) 변화할 수 있는 능력, (2) 변화의 관리, (3) 변화의 측정이 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
- 특히, 관리는 생물적 변환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들, 예를 들어 수분, 온도, 햇 빛, 비옥도 등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는 활동을 말함. 이와 같은 특성은 농 업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따라서 원양어업, 천연림벌 채, 임산물채취 등 관리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은 농림어업활동이 아님.
-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의 성장, 퇴화, 생식 등의 결과로 나타나거나 벼, 수 박, 사과, 절화, 양모, 우유 등과 같은 수확물의 생산으로 나타남.

4)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자산 인식 및 측정

가)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자산 인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 로 (1) 자산에 대한 통제권,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종전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은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자산의 인 식조건에 추가되었다는 것임. 이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이 원가중심의 자산평 가가 이루어진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으로 자산의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임.

나)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 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하여야 함. 다만,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 이

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됨.

-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연령, 품질, 무게 등 자산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시장의 가격결정기준을 적용하면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확물인 사과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사과 품종, 출하처, 등급 등을 반영한 시장가격이 공정가치로 이용될 수 있음.
-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가격은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행 시장상황을 중시하는 공정가치에 조정을 가할 필요는 없음.
- 보고기간 직전에 심은 과수 묘목처럼 최초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소나무 조림지처럼 생산기간이 매우 길어서 단기간의 생물적 변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음.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한해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함. 이후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

<표 45>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구분	최초 인식시점	최초 인식시점 이후
생물자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가능 시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불가능 시 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순공정가치
수확물	순공정가치	재고자산의 원가

다) 생물자산의 분류²⁰⁾

- 생물자산은 생산용 생물자산이나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성숙과 미성숙으로 분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 46). 생산용 생물자산은 수확물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재생하는 자산으로서 사과나무, 잣소, 번식우, 번식돈 등이 포함됨. 소비용 생물자산은 수확물로 수확하거나 생물자산 자체적으로 판매할 자산을 말함. 성숙 생물자산은 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하며, 소비용 생물자산의 경우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생물자산을 말함.

<표 46> 생물자산의 분류 예시

생물자산	생산용 생물자산	성숙
		미성숙
	소비용 생물자산	성숙
		미성숙

5) 정부보조금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0) 생물자산의 분류는 공시에 제시되어 있으나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해 생물자산의 측정부문에서 설명하였음.

-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와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함.

<표 47>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방법

	조건	인식 시점	인식 방법
순공정가치로 측정된 생물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있는 경우	조건 충족 시점	당기 손익
	없는 경우	보조금 수취 시점	당기 손익
특정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조건 충족 시점	당기 손익

6) 공시

- 공시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생물자산의 내역과 분류, 재무제표 기술사항에 대한 보완, 회계처리 근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자산과 관련된 제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7) 제언

가) 생물자산의 분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시에서 생물자산을 생산용과 소비용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성숙과 미성숙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음. 또한 부록에서 낙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사례로서 젖소를 성숙과 미성숙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숙과 미성숙을 포함한 모든 젖소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생물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분류방법을 규정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국별로 생물자산의 분류가 다른 구분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생물자산의 분류가 이루어지면 공시에서 그 구분기준을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는 농업회계처리모범(례)에서 생물자산을 생산용 생물자산과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생산용 생물자산은 유형자산에 그리고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음(표 48). 생산용 생물자산은 성숙도에 따라 생물자산과 성장중인 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소비용 생물자산은 성숙도에 따라 생산물과 성장물로 분류하고 있음.

<표 48> 생물자산의 분류 비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농업회계처리모범(례)	
생산용 생물자산	성숙	생물자산	생산용 생물자산 (유형자산)
	미성숙	성장중인 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	성숙	생산물	소비용 생물자산 (재고자산)
	미성숙	성장물	

- 생물자산의 분류는 자산의 성격 및 중요성, 측정의 용이성, 정보의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나) 공정가치 vs. 원가

(1) 생물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생물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정가치에 의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공정가치의 사용이 원가보다 유용한 이유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음. 첫째, 많은 경우 생물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됨. 이러한 시장가격은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시장기대의 신뢰성을 증진시킴. 둘째, 연산품과 결합원가의 경우 원가 배분이 복잡하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짐. 셋째, 생산기간이 긴 경우 회계기간이 생산기간을 잘 대변하지 못함.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회계기간별 평가를 가능케 하여 당기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측정함에 있어 보다 유의성을 가짐. 넷째, 자체조달원가와 구입원가가 다를 경우 유사한 자산에 다른 원가가 발생함. 이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인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킴.

- 반면, 생물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공정가치의 단점 또는 원가의 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생물자산의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측정기준으로 부적절함. 둘째, 보고가 잦을 경우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음. 셋째, 역사적 원가를 사용하는 관행은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넷째, 원가 측정치가 보다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음. 다섯째,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생물자산, 예를 들어 조림지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발견할 수 없음. 여섯째, 공정가치 측정은 미실현손익을 인식하며, 수익 인식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에 모순됨. 일곱째, 생물자산은 판매목적으로 보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재무상태표일의 시장가격이 판매될 자산의 가격에 근접하지 않을 수 있음.
- IASC는 위와 같은 생물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의 추정치가 명백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물자산의 가치를 측정함.
-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무정보의 이용자, 측정의 용이성, 정보의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2) 수확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수확물을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이는 재고자산의 원가가 됨. 국제회계기준에서 수확물을 취득원가 대신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생물자산의 가치가 수확물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임.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수확물의 공정가치가 알려져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확물의 공정가치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둘째, 수확물 시장이 생물자산 시장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생산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임. 이와 같은 이유로 생물자산에서는 예외적으로 원가에 의한 자산 측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확물에서는 허용하지 않음.
- 이상의 논리에 의하면 생물자산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거나 수확물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에 의한 수확물의 평가가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없음.

다. 농림어업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1) 회계기준의 구성 및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2009년 11월에 제정한 회계기준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음.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는 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에서 정리되어 있음. 제1절 '농림어업'은 목적, 적용범위,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정부보조금, 주식공시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1호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며, 주요한 차이점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가치 측정에 있음. 본 절에서는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설명함.

2)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 가치 측정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인식 후에는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함(표 49). 순공정가치법을 선택할 경우 활성시장의 시장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이용하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함.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산의 기대순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있음.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함. 이러한 측정치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됨. 한편,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함.

<표 49>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 가치 측정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생물자산	최초 인식 시점	순공정가치 (취득원가 가능)	취득원가
	인식 후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택일
수확물	최초 인식 시점	순공정가치	순공정가치 (취득원가 가능)
	인식 후	재고자산의 원가	재고자산의 원가

라. 중소기업회계기준(공개초안)

1) 제정 배경 및 추진경과

-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또는 '기업'이라 한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회계처리기준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법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정보의 외부이용자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 대상이 단순하고 회계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보다 단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음.
-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내용이 단순하고 회계처리의 부담이 적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회계기준원은 2012년 4월 18일 11명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012년 6월 22일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하여 2012년 6월 27일~8월 3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희기간을 거쳤음. 2012년 9월 중에 제정안에 대한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10월 초순에는 법무부에 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2) 주요 특징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처리특례를 모두 수용하고, 그 중 일부는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칙 중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규정은 일부 수정하고 예시나 실무지침을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음. 또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자산의 인식이나 측정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도 일부 수용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이 쉽도록 하였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내용을 단순화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였음.

3) 적용

-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및 기타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함.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외감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함.

4) 주요 내용

가) 공개초안의 구성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총6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50). 각 장들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해당 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 하단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표 50>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장	제목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적용, 제정, 재무제표 등 일반적인 사항
제2장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자산별 회계처리 방법 등
제3장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항목별 인식 및 측정 등 회계처리방법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평가기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
제5장	자본거래	주식의 발행, 취득과 처분 등
제6장	주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권장 주식
부칙	부칙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나) 자산의 인식 및 평가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달리 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자산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원가 기준은 공정가치에 대한 발견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집 및 가공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에서 신뢰성 있고 유용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함.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장기 미판매, 진부화에 의한 판매가치 하락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함.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함.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함.

<표 5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자산 측정 방법

	최초 인식시점	인식 이후
유형자산	취득원가	원가법
재고자산	취득원가	저가법 (취득원가 vs. 순실현가능가치)

다) 정부보조금의 인식과 평가

-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의 수취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인식함. 정부보조금은 자산관련 보조금과 수익관련 보조금으로 구분됨.
-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부보조금을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게 된 때와 그 이후에는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되,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음.
- 수익과 관련된 보조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함.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상계함.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5) 제언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회계기준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이용자, 정보작성자, 회계자료의 이용가능성 등 회계현실을 감안하여 재무제표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작성함.
-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회계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회계처리기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농업분야의 회계처리기준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41호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에 대응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에서 농림어업 활동관련 회계처리를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이나 새롭게 마련될 농업회계기준을 참조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분석

가. 추진배경 및 경과

- IMF 외환위기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함. 농업금융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2000년 9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는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함.
- 농림부는 2001년 3월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농업회계준칙'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계획을 포함시킴.
- 한국회계기준원은 2004년 5월 '농어업기준서'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수분야에 대한 회계기준서를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 이후 농업분야의 회계기준제정이 타 분야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함.
- 농림부는 2004년과 2005년 농업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함. 2004년의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의 회계처리실태 및 국제회계기준 제41호를 분석하는 등 표준농업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2005년의 연구에서는 2004년의 연구결과 중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처리방법 및 표준재무제표와 계정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 농림부는 2005년 대학교수, 회계사, 정부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농업회계처리기준(시안)'을 검토함. T/F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농업회계처리모범(례)' 시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농림부는 2006년 8월 30일 ‘농업회계처리지침(안)’(농림부 공고 제2006-163호)을 입안 예고함. 2007년 1월에는 농림부 공고 제2006-163호를 정리하여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발간함.

나. 모범(례)의 구성

-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이하 ‘모범(례)’라 한다)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정하지 않은 농업분야의 회계처리방법과 기준을 다루고 있음. 이 모범(례)는 기업회계기준의 틀 안에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모범(례)는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생물자산 및 수익의 인식, 생물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생물자산의 취득원가, 생산원가명세서, 재무제표, 시행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그리고 법적 근거에 초점을 두고 모범(례)을 검토하였음.

다.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4. 이 모범(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나) ‘농업활동’은 농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다)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 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된다.

(라)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생물자산 자체로서 판매 가능한 수확물을 말한다.

(마) ‘형질변환’은 생물자산의 생산, 성장, 퇴화 등과 같은 질적·양적인 변화

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

(바)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 기업회계기준서는 '농림어업(Agricultur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농어업을 농업과 어업으로 분류하고 임업을 농업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 8차 개정(2000.1.7)의 대분류와 유사함. 8차 개정에서는 농업과 임업을 하나의 대분류로 묶고 어업을 별개의 대분류로 설정하였음. 통계청은 2007년 12월 28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통해 농업, 임업 및 어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분류로 설정하고, 농업, 임업, 어업을 중분류로 설정하고 있음. 또한 농업으로 분류되어있던 일부 임산물 채취업과 내수면 양식 어업을 각각 임업과 어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각 산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
- 현실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농어업이란 용어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회계처리대상을 농업으로 한정하여 '농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농업회계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모범(례)에서 말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이 조항은 이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로 변경되었으며, 농업경영체를 농어업경영체육성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의한 농업경영체로 지칭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지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는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 구분하고 있음. 그리고 농업경영체는 다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어업경영체는 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구성됨. 이 부분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정합성 검토

- '농업활동(Agricultural activity)'은 기업회계기준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모범(례)의 생물자산(Biological asset)에 대한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서와 동일함. 생물자산의 예로 양, 조림지의 나무, 식물, 젓소, 돼지, 관목, 과수 등이 있음.
- 모범(례)은 추가적으로 생물자산을 '생산용 생물자산'과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생산용 생물자산은 그 자체로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우유생산을 위한 젓소, 과일 생산을 위한 과수나무, 달걀 생산을 위한 산란계, 어린 가축 생산을 위한 번식용 가축 등을 일컬음. '소비용 생물자산'은 그 자체로서 판매가 되는 비육돈, 비육우, 육계, 채소, 벼, 밀, 옥수수, 인삼, 목재용 나무 등이 해당됨.
- 기업회계기준서 공시사항에서는 생물자산을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생물자산은 회계관행이나 국가별 특성에 맞게 분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범(례)에서 정한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는 '수확(Harvest)'과 '수확물(Agricultural produce)'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음. '수확'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산 과정의 중지로 정의되고,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harvested product)로 정의됨. 따라서 모범(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수확'과 '수확물'에 대한 정의를 합쳐 놓은 개념임. 생산이 생물자산이나 비생물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인데 비해, 수확은 생물자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임.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범(례)의 '생산물'을 기업회계기준서의 '수확'과 '수확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범(례)의 '형질변환'은 생물자산이나 비생물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용어임. 반면, 기업회계기준서의 '생물적 변환'은 형질변환을 농림어업분야의 생물자산에 한정시킴으로써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 또한 기업회계기준서의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의 생식과정까지 포함함으로써 변화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따라서 '형질변환'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의 '생물적 변환'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정가치의 측정(Fair value measurement)방법을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서 제13호로 제정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여 2011년 11월 18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제정함. 모범(례)와 비교해 볼 때 기업회계기준서의 공정가치는 시장에서의 정상거래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산 매도와 부채 이전에 따른 가격을 모두 정의하고 있음. 반면, 모범(례)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음. 그러나 생물자산과 수확물이 회계처리대상이기 때문에 부채에 관한 사항은 본 회계기준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공정가치 정의를 모범(례)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가치의 정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용어가 매각부대원가(Cost to sell)임. 매각부대원가는 자산의 처분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증분 원가로서, 예를 들어 사과 판매에 따른 선별비, 운송비, 하역비 등 수수료를 말함.

2) 목적

1.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이하 '모범(례)'라 한다)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 법적 근거가 미약함.

○ 반면, 2009년 4월 1일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들을 규정하고 있음.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제21조제2항에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농업회계기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임.

나) 정합성 검토

○ 농업경영체는 농업활동 외에 가공사업, 유통사업, 판매사업, 수출사업, 기타 부대사업, 농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대상을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3) 적용범위

2. 이 모범(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자산 및 수확시점의 생산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모범(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가) 정합성 검토

-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회계처리대상은 이미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제1절에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모범(례)는 기업회계기준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되, 농업분야의 회계 관행, 현실성,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의 기업회계기준서 보다 회계 관행과 현실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이 모범(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농림어업' 적용범위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1) 생물자산, (2) 수확시점의 수확물, (3)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임. 이 중 정부보조금은 공정가치에 의한 생물자산의 평가와 관련이 있음. 만약, 생물자산의 평가에 공정가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면 될 것임.

4) 생물자산의 계정분류

유형자산

9.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10.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장 중인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11. 수확시점 후의 생산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12.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

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이 성장 중인 경우에는 ‘생장물’로 처리하고 수확시점 후에는 ‘생산물’로 표시한다.

가) 정합성 검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생물자산을 생산용생물자산과 소비용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생물자산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례에서는 젓소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다음 성숙과 미성숙으로 구분하였음. 따라서 각국의 회계 관행과 회계 현실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생물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범(례)의 구분 방식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모범(례)는 생물자산을 보유목적과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에 적절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분류방식을 일부 수용하여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음.

<표 52> 생물자산의 분류(모범(례))

자산	분류	비 고
유형자산	생물자산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원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성장중인 생물자산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원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고자산	생산물	수확시점 이후의 소비용 생물자산
	생장물	성장중인 소비용 생물자산

- 현재, 모범(례)에서는 생물자산을 1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용 성숙 생물자산으로 한정하여 지칭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생물자산이란 살아있는 동식물을 말하며, 성장중(미성숙)에 있거나 소비용으로 분류되는 동식물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용어상의 혼란이 초래됨.

- 생물자산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면 '성숙-생물자산'과 '미성숙-생물자산'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개념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내구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물자산의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산란계는 자체 소비보다는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지만 성숙 도달연령이 6개월, 내용연수가 14개월밖에 되지 않음(농촌진흥청, 2009). 산란계는 사육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체관리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산란계를 유형자산인 미성숙-생물자산과 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한 다음, 전자와 후자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분류방식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또한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자산의 인식 시점과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적절한 평가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에 따른 부담의 완화 효과가 회계처리에 따른 부담비용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생물자산 중 소비용 생물자산은 성장중에 있을 경우 성장물로 분류하고, 수확시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생산물로 분류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과정의 중지를 '수확'이라고 정의하고,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수확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수확시점에 있는 소비용 생물자산을 '수확물'로 분류할 수 있고, 성장과정에 있는 소비용 생물자산을 '성장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생물자산 및 생산물의 자산인식과 측정

5.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아래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 과거 농업활동 또는 거래 등의 결과로 취득한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을 자기책임 하에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다)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수확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금유입액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7.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가) 정합성 검토

○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 인식조건으로 공정가치와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범(례)은 취득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모범(례)가 농업분야의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생물자산과 생산물의 자산 측정을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 책임 하에 처분 또는 사용’이라는 용어 대신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로 통일하거나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자산의 인식조건으로 ‘경제적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 용어는 매출 등의 수익과 혼동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효익’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생물자산과 생산물은 공정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 따라서 신뢰성 및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범(례)과 같이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정상상태에 이른 생물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예를 들어, 성목이 된 과수, 번식용 가축 등은 직접 판매되기 보다는 수확물의 생산에 목적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공정가

치의 발견이 어려움. 미래의 기대수익흐름을 현재가치화하여 공정가치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질병이나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생물자산의 측정은 역사적 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생산물은 생물자산과는 달리 수확시점에 대부분 공정가치가 형성됨. 그러나 판매되기 전까지는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음. 예를 들어, 수확기에 있는 과일, 채소, 화훼, 곡물 등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품질과 수량을 선행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출하처별 등급별 시장가격을 파악해야 함. 이처럼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는 부정확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됨. 이미 생장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생산과정에 투입된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로 생산물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o 모범(례)는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보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함.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시 농업분야 시장특성을 반영하여 원가를 사용한 점은 모범(례)와 동일함.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수확물에 대한 최초 인식과 측정에서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원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모범(례)는 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공정가치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o 주석은 재무제표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사항들 중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따라서 먼저 재무제표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이 선택되면 그에 맞게 주석이 정리될 필요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주석은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6) 생물자산의 취득원가

14.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매입가액에 성장기간 동안 생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15. 성중중인 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생산물의 생산원가에 삽입한다.

가) 정합성 검토

-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는 세금, 매입할인, 에누리과 환입, 취득과정에서 소요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가격에 생물자산이 정상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이와 같은 정의는 국제 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가 구성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생물자산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비용은 원가에 가산되어야 함. 이는 성장 중에 발생한 비용이 생물자산을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기여하기 때문임.
 - 반면,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비용의 성격에 따라 생물자산의 원가 또는 생산물의 생산원가로 처리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산능력의 증대, 내용연수의 연장, 상당한 품질향상이나 원가 절감 등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고 생물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 원가로 처리할 수 있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생산물의 생산원가를 구성함.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용 등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 미성숙-생물자산, 성숙-생물자산, 소비용 생물자산(성장물)은 동일 농업경영체 안에서 혼재되어 사육되거나 재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수확물의 원가 또는 생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미성숙-생물자산의 회계처리는 구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생물자산의 성장 단계에 따른 원가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산란계와 같이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회계실무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의 인식시기와 측정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산란계의 자산 인식 시기를 보고기간 말로 정하고, 성숙과 미성숙

의 구분 없이 총 투입비용을 산란계의 자산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를 별도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생물자산 및 생산물의 자산인식과 측정’에 포함시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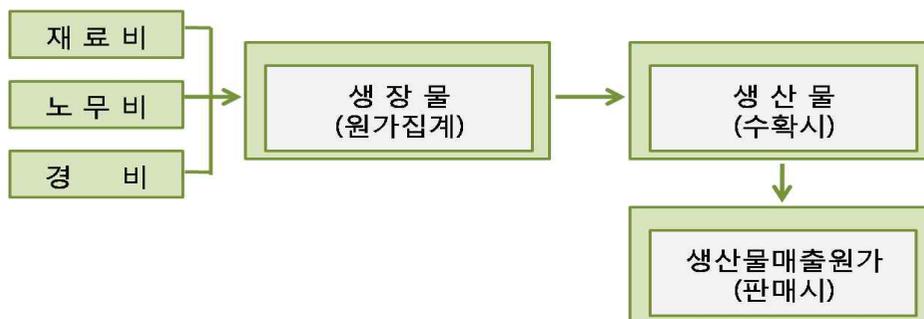
7) 생산원가명세서

16. 생산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생산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17. 당기생산물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재고금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1’과 같다.
18.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정합성 검토

- 생산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는 아님. 그러나 제조기업이나 농업에 있어서 생산물에 대한 원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특히, 생산원가는 농업경영자가 생물자산별 수익성을 분석하고 작목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임.
 - 다만,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이 복합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된 원가를 작목별로 배분하는 것이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생산물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반드시 작목별로 구분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경영계획, 분석, 진단을 위해서도 작목별 원가 배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며, 생산원가는 수확시점에 수

확물의 원가가 됨. 그리고 생산물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가 됨.



<그림 1> 생산과정의 회계처리 절차(출처 : 모범(례))

-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자료나 축산물생산비조사자료, 농촌진흥청의 소득자료는 생산비를 작성할 때 자가노동, 자기토지, 자기자본의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이는 통계자료의 작성이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작목별 보상근거 산정 등 농업분야의 특수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농업생산은 전통적으로 고용노동보다는 자가노동에 의존적이며,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자본의 이용도가 높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와 같은 관행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자기소유의 토지, 노동, 자본의 이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없음. 타인 소유에 대해서는 각각 임대료, 노임, 이자비용(영업외비용) 등의 형태로 회계처리가 가능함. 자기소유의 토지, 노동, 자본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이익, 즉 자기노동에 대한 보수나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의 형태로 나타날 것임.
-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는 자가노임에 대해 투입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노임처럼 계산하여 복식부기로 회계처리 할 경우 비용에 대응하는 부채로 기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자가노임, 자기 소유의 토지와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등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함.

-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자가노동과 자기 소유의 토지 및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이 경영개선목적이나 경영계획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생산원가명세서의 작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수익 인식 및 측정

8.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수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이미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시기는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인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가) 정합성 검토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조건과 내용이 유사하나 일부 용어에서 차이가 있음. 전체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 조건을 그대로 차용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산의 명칭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생물자산이나 생산물의 경우 품질저하, 부패, 소멸 등의 위험이 공산품에 비해 매우 큼. 따라서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9) 재무제표

19.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재무제표의 양식은 '별첨 2'와 같다.

가) 정합성 검토

-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제208조제1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등이 기록된 장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함. 조세 측면에서 재무제표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조세목적이 아니라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가족단위 경영이 주가 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10) 시행일

20. 이 모범(례)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모범(례)는 이 모범(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라. 우리나라 농업현황과의 정합성, 문제점 등 타당성 분석

-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모범(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물자산과 생산물의 자산 인식과 측정에 있음. 국제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자산을 측정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계현실을 감안하여 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회계기준임. 반면, 모범(례)는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중심의 회계기준임.
- 공정가치는 자산이 거래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역사적 원가는 과거 원가를 반영하여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공정가치가 자산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의 지속적 발견이 전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시장의 가격이나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생물자산은 한우, 돼지, 닭 등 가축,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 화훼, 채소, 버, 인삼 등 다양함. 성숙기에 이른 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미래 생산량이나 품질 등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익흐름의 현재가치로 가격을 책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예를 들어, 성목에 이른 사과나무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흐름도 매우 불확실함. 따라서 공정가치에 의한 생물자산의 가치 측정은 신뢰성 있는 측정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인식조건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음. 반면, 원가로 생물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면, 구입과 관련된 비용에 성장중에 투입된 비용을 합하여 측정할 수 있음. 구입비용과 투입비용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산의 측정금액이 될 수 있음.
- 수확기에 있는 농산물은 대부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됨. 품질이나 규격별로 생산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은 출하처 및 출하시기,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발견됨. 따라서 수확물을 대상으로 품질을 분류하고 출하처와 출하시기를 결정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음. 따라서 공정가치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공정가치를 찾아서 수확물의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모범(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하여 취득원가나 생산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됨. 이는 공정가치의 측정에 따른 시간과 노력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으며,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측정 금액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 기타 농업분야 적용중인 회계기준 분석

가. 농협 등 조합회계

1) 농협 회계(2010.11.29. 개정)

- 농협 회계규정(2010.11.29 개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2010.12.31일

현재 시행 중인 기업회계기준·기준서 및 업종별회계처리준칙)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회계원칙을 규정하고 있음(회계규정 제4조).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인식과 측정방법은 회계규정 제25조의2항~제25조의4항에서 정리하고 있음.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에서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함.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원가로 측정함.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측정치가 재고자산의 원가가 됨.
- 원가계산이 필요한 목장·종돈장·가축개량사업과 원가계산을 요하지 않은 생물자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생물자산은 성장단계에 따라 성숙기와 미성숙기로 구분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생산용생물자산과 소비용생물자산으로 구분함.

2) 기타 조합회계

- 산림조합의 회계규정(2010.12.21개정)에는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회계규정 제135조).
- 수협회 회계규정(2010.10.13개정)에는 생물자산 및 수확물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없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회계규정 제5조의2 제2항)

나.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1) 통계청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농업부문의 지정통계로는 농림어업총조사, 농어업법인

조사, 농가경제조사, 가축동향조사 등이 있음. 이 중 자산의 분류와 측정을 포함하고 있는 통계로는 농가경제조사통계가 있음.

- 농가경제조사통계는 농가자산을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함. 생물자산은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되, 대동물과 대식물은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소동물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함.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대동물과 대식물은 평가시점에 시장가격으로 측정함.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동물과 미처분농축산물의 경우에도 평가시점에 시장가격으로 측정함.
- 대동물이란 한육우(송아지, 육성우, 성우), 젖소(송아지, 성우), 돼지(자돈, 성돈), 기타(염소, 개 및 가격이 마리(군)당 10만원 이상인 동물)를 말함. 소동물이란 산란계(성계, 중 초생추), 육계 및 대동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동물(토끼, 오리 등)을 말함.
- 대식물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심은 과수, 뽕나무, 관상수 등 일체의 다년생 목본성 식물을 말함.
- 미처분농축산물이란 자가생산한 농축산물(종자용이나 사료용으로 보관중인 양도 포함), 판매가 가능한 육성중인 다년생 소식물(분재, 화초, 인삼, 약초, 묘목 등)과 일년생화초, 일시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수확을 연기하여 해를 넘겨 수확하는 작물을 말함. 구입 농축산물이나 농지임대료로 받은 농축산물 등과 같이 다른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대상이 아님. 단가는 현지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평가함.

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연구·지도 기관임. 농가의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작목별 소득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경영분석 및 개선을 위한 기초단계로 작목별 경영기록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경영기록장은 작목별 영농작업 관련 일지와 수익성 분석에 필요한 수입·지출 관련 항목을 기록하도록 제작되었음. 수익성은 소득 또는 순수익으로 측정하며, 각각 수확물의 가치인 조수입에서 수확물의 생산에 소요된 경

영비 또는 생산비를 차감함으로써 계산됨.

- 특히, 기회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노력비, 자기자본용역비, 자기토지용역비를 생산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관리활동을 수반하지 않은 야생초, 낙엽 등을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 투입된 자가노력비 및 농기계비용을 비료비로 계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용 항목들은 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대상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소득 자료가 외부이용자 보다는 개별 농업인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임. 기회비용을 포함한 소득 자료는 농업인의 경영분석 및 진단뿐만 아니라 작목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기준으로 측정하며, 투입된 자산은 시가 또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거래의 기록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단식부기 형태로 작성함. 따라서 자산의 변동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농촌진흥청의 수입·지출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회계현실과 자료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농업회계 교과서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업회계학 관련 교재에는 농업회계(권오욱·신해식·양병우·한성일, 1998), 농업회계학(신해식, 2011), 농업경제 학도를 위한 회계학(변규섭·김정주·김영수·박종섭·이영만·임재환, 2001) 등이 있음.

1) 농업회계(권오욱·신해식·양병우·한성일, 1998)

- 이 교재에서는 자산을 생산자산과 유통자산으로 분류하고, 생산자산을 다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생물자산 중 대식물과 대동물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소식물과 소동물은 준현물로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대동물은 돼지, 양, 염소, 한우, 육우, 말 등 증가축 이상의 큰 가축으

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을 말함. 대식물은 과수나무, 차나무, 뽕나무 등 목본성 식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을 말함. 소동물은 가금류, 토끼 등과 이보다 작은 동물을 말하며, 소식물은 벼, 보리, 밀 등 초본성 식물을 말함.

- 대동물과 대식물은 인식시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육성기에는 증가계산하고 용역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자가노력비는 성인환산 노동력 투입시간에 시간당 노임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나누어 처리함. 자가노력비의 회계처리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2) 농업회계학(신해식, 2011)

- 이 교재에서는 자산을 생산자산과 유통자산으로 분류하고, 생산자산을 다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생물자산 중 대식물과 대동물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소식물과 소동물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젖소, 한우번식우, 번식돈 등과 같이 내구연수가 긴 가축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며, 한우비육우, 비육돈, 산란계 등과 같이 내구연수가 짧은 가축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함. 이 교재에서는 생물자산의 크기를 기준으로 용어를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생물자산을 분류할 때에는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생물자산 중 고정자산은 인식시점에 취득가격으로 평가하고, 육성기에는 증식계산을 하며, 용역기 이후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소식물과 소동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며 문전가격, 즉 시가에서 판매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나 비용가로 평가함.
- 이 교재는 회계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자산의 분류방식이 다름.

3) 농업경제 학도를 위한 회계학(변규섭·김정주·김영수·박종섭·이영만·임재환, 2001)

- 농업용 자산은 생산자산과 유통자산으로 분류되며, 생산자산은 다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됨. 생물자산인 대동물과 대식물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됨.

대동물은 번식돈 이상의 크기를 갖는 동물로서 육성기에는 증감계산을 하며, 용역기에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함. 육성기에 있는 대동물과 비육용 동물은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함. 대식물은 과수나무 등 목본성 식물을 말하며, 육성기에는 증가계산을 하고, 용역기에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함.

- 소식물은 벼, 맥류, 채소류 등을 말하며, 비용가를 이용하여 자산을 평가함. 소동물은 닭, 꿀벌 등을 말함. 기회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전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 방법이 유사하나 자산의 분류방식이 다름.

라. 농업회계프로그램 현황

- 최근 농업분야에서 이용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농림수산정보원의 농가경영장부시스템, 수협의 푸른아라 2009, 농협의 알차니 2007이 대표적임.

1) 농가경영장부시스템

- 농가경영장부시스템은 가장 최근인 2011년 8월에 보급된 농업용 프로그램으로 회계관리와 생산관리를 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웹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음.
-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간이장부에 입력하면 간이생산원가명세서나 간이손익계산서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회계프로그램이 수지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또한 수지분석에서 중요한 비현금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어 있으며, 농자재의 구입 및 투입 관련 계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논의가 불가능함.

2) 푸른아라 2009

- 푸른아라 2009는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임. 엑셀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수지분석이 주목적이며, 단식부기의 형태로 자료를 입력하도록 제작되었음. 수입과 지출의 기록은 현금의 유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고의 증감이나 감가상각비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함.

3) 알차니 2007

- 알차니 2007은 엑셀 매크로를 이용하여 제작된 농업용 회계전용 프로그램임. 타 농업회계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초와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관련 자료를 입력토록 함으로써 재무상태표의 작성이 가능함. 또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생물자산 중 번식착유가축과 과수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생육축산물이거나 생육농산물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함. 과수의 경우 성장중인 경우에는 유동자산인 생육농산물로 분류하며, 번식가축의 경우에도 성장중인 경우에는 유동자산인 생육축산물로 분류함. 과수는 성목시점에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하며 조성원가로 측정함.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생육중인 자산이나 번식가축은 시가로 평가함.
- 알차니 2007의 회계처리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지만, 성장중인 과수와 가축의 분류방식이 다른 특징이 있음.

V. 농업회계기준 및 재무제표의 표준에 대한 제안

1. 회계기준의 선택

가. 정합성

- 회계기준은 회계처리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재무 정보를 산출하는데 기여함. 동일한 형식을 갖는 재무정보(회계처리방법)라도 회계처리방법(재무정보)이 다를 경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용성이 저하됨.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를 통해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이 개념체계의 틀 안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의 제정이나 개정도 할 수 있음. 농업분야의 회계기준도 이 틀을 준수하면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재무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재무제표는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 목적적합성(relevance), 신뢰성(credibilit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함.
-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음.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정보나 미래 전망치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정보나 미래 전망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반면, 종전의 재무제표는 과거 회계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지만 의사결정의 유용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질적 특성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질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기로 하였음. 이 기준은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준을 선택하는 비상장기업에도 적용됨. 그리고 회계관행과 우리나라의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 규칙중심이고 역사적 원가주의 중심이었다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고 공정가치 중심임. 원칙중심이란 회계기준이 재무보고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보다 회계처리의 유연성이 증가하였음. 공정가치중심이란 자산의 가치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임. 공정가치는 현재의 시장정보를 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함.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치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되, 회계현실을 감안하여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자산의 평가를 적극 수용한 형태의 회계기준임.
- 현재 농업분야에 보급중인 농업회계처리모범(례)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임. 이 모범(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생물자산과 생산물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생물자산과 생산물에 대한 회계처리도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를 준수하고 있음. 모범(례)에서는 생물자산과 생산물의 평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생물자산과 생산물의 경우 수확시점이나 특정 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가격의 형성이 어렵고, 시장가격이 형성되더라도 공산품과는 달리 출하처, 출하시기, 품질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되므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시간과 노력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정확도가 떨어져서 측정된 가치의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임.
- 농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경우 농업현실과 회계관행을 반영하여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정가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농업현실을 반영하여 작성된 모범(례)와 정합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나. 현실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자산 인식 조건으로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음. 생물자산의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이 존재하

지 않아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 평가가 쉽지 않음. 또한 최초 인식시점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수확시점에 있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는 대부분 시장에서 발견 가능함. 그러나 판매처, 판매시기, 수확물의 품질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의 형성이 가능함. 생산자가 품질이나 규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공산품과는 달리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고 있음. 수확된 농산물의 품질등급을 세분화해야 하고 적절한 시장을 찾아서 품질별 가격을 발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결국,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한 공정가치의 평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회계처리에 익숙하지 않고 회계처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농업경영체에게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평가가 생산원가에 의한 자산평가보다는 손쉬운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회계기록이 전산 프로그램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공정가치에 의한 자산 평가가 더 번거로운 대안이 될 것임.

다. 이용가능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모든 기업들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함. 기타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특히,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내국법인의 경우 관행을 적용해야 하는 특정항목을 제외하곤 세무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에 의하면 논밭을 이용한 작물생산에서 발생한 소득, 농가부업소득 등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래 사실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60조). '간편장부대상자'에는 농업·임업 및 어업 등에 종사하

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자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따라서 농업·임업 및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됨.

- '간편장부'에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 그리고 '복식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또한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였거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에는 '복식장부'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항목에 따라서는 관행의 적용이 허용되기도 함.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함.
- 결국, 회계기준의 선택 및 재무제표의 작성은 재무제표의 사용처 또는 용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농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의 이용자는 농업경영체임. 문제는 농업분야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경영체가 많지 않으며, 회계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임. 농업분야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세목적과 자산운용결과를 외부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영체는 농업법인인데, 농업법인 역시 가족이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음. 농업경영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농어가는 재무제표의 필요성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계에 관한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임. 모범(례)의 보급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농업회계기준을 정비한다고 해도 농업회계기준의 이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재무제표는 이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함. 재무제표가 단순히 외부이용자에게 경영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보다 많은 정보와 작성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계능력이 부족한 농업경영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농업경영체가 회계처리방법을 학습하고 회계처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관련 비용을 상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회계기준의 선택

- 농업경영체를 위한 회계기준의 선택은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회계자료의 획득 가능성, 회계작성자의 수준, 재무정보의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회계기준의 선택은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 관련기업 중 상장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둘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셋째, 법적 요구조건이 없는 농업경영체는 모범(례)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법적 요구조건이 없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작성되어 보급되고 있는 모범(례)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농업회계기준(안)과 표준재무제표(안)을 작성하였음.
- 한편, 농업회계기준만을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새롭게 제정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회계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 관련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안)에 부가적으로 수정·보완된 모범(례)를 첨가하는 형태의 농업회계기준(안)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음.

2. 농업회계기준(안)

가. 기존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의 수정

목적

1.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이하 ‘모범(례)’라 한다)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

1. 농업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2. 이 모범(례)는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자산 및 수확시점의 생산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모범(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적용범위

2. 이 회계기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자산 및 수확시점의 수확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 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 중소기업회계기준서(공개초안)가 확정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함.

용어의 정의

4. 이 모범(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나) ‘농업활동’은 농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 (다)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 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됨.
- (라)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생물자산 자체로서 판매 가능한 수확물을 말한다.
- (마) ‘형질변환’은 생물자산의 생산, 성장, 퇴화 등과 같은 질적·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
- (바)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4. 이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나) ‘농업활동’은 농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 (다)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된다.
- (라) ‘성숙-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
- (마) ‘미성숙-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 (바) '수확'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 과정의 중지를 말한다.
- (사)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한다.
- (아)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정으로 구성된다.
- (자)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생물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유형자산

- 9.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10.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장 중인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 11. 수확시점 후의 생산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 12.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3.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이 성장 중인 경우에는 '성장물'로 처리하고 수확시점 후에는 '생산물'로 표시한다.

생물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유형자산

- 5.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6.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재고자산

7. **수확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8.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산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이 성장 중인 경우에는 ‘생장물’로 처리하고 수확시점에는 **‘수확물’**로 표시한다.

생물자산 및 생산물의 자산인식

5.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가) 과거 농업활동 또는 거래 등의 결과로 취득한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을 자기책임 하에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다)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6.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수확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금유입액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7.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생물자산의 취득원가

14.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매입가액에 성장기간 동안 생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15. 성중중인 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생산물의 생산원가에 삽입한다.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자산인식과 측정

10.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은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가) 과거 농업활동 또는 거래 등의 결과로 취득한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을 자기책임 하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 (다)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1. 생물자산(유형자산(미성숙-생물자산, 성숙-생물자산), 재고자산(생장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구입가액 또는 최초 인식시점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 (가) 유형자산에 속하는 미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매 보고기간 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 (나)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정상적인 수확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성숙-생물자산으로 인식한 이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재고자산에 속하는 성장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12.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성장 및 수확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생산원가명세서의 생산원가로 표시한다.

생물자산과 생산물의 수익인식

8.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수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이미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시기는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인도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수익인식

13.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라)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생산원가명세서

- 16. 생산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생산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 17. 당기생산물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재고금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1’과 같다.
- 18.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원가명세서

- 14. 수확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수확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 15. 당기수확물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 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1’과 같다.
- 16.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

- 19.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재무제표의 양식은 ‘별첨 2’와 같다.

재무제표

1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재무제표의 양식은 '별첨 2'와 같다.

권장 주석

18. 재무제표의 작성시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19.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시행일

20. 이 모범(례)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모범(례)는 이 모범(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20. 이 기준(안)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기준(안)는 이 기준(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나.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보완한 농업회계기준(안)

1)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목차(2012.6.22현재)

o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은 총 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으로 3조가 있음.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 제3조 제정
- 제4조 재무제표의 목적
- 제5조 회계정책의 선택
- 제6조 재무제표
- 제7조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제2장 재무상태표

- 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제9조 당좌자산
- 제10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
- 제11조 재고자산
- 제12조 투자자산
- 제13조 유형자산
- 제14조 무형자산
- 제15조 기타비유동자산
- 제16조 유동부채
- 제17조 비유동부채
- 제18조 매입채무 등의 제거
- 제19조 종업원급여
- 제20조 주식매수선택권
- 제21조 그 밖의 충당부채
- 제22조 자본금
- 제23조 자본잉여금
- 제24조 자본조정
- 제25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제3장 손익계산서

- 제2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제27조 수익의 인식
- 제28조 수익의 측정
- 제29조 매출액
- 제30조 매출원가
- 제31조 판매비와관리비
- 제32조 영업외수익
- 제33조 영업외비용
- 제34조 법인세비용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 제35조 자산의 평가기준
- 제36조 재고자산의 평가
- 제37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 제38조 투자자산의 평가
- 제39조 유가증권의 평가
- 제40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
- 제41조 매입채무 등의 평가
- 제42조 파생상품의 평가
- 제43조 사업결합
- 제44조 외화거래
- 제45조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 제46조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 제47조 리스거래

제5장 자본거래

- 제48조 주식의 발행
- 제49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 제50조 배당
- 제51조 주식의 소각

제6장 주식

제52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53조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4조 권장 주식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2012.6.22현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제1항의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정)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한국회계기준원이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제4조(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5조(회계정책의 선택)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6조(재무제표)

-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같다. 이하 같다), 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 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 분을 작성한다.
- 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하단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

- ① 이 기준에서 정한 항목 가운데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② 이 기준에서 정한 항목 외에도 중요한 항목은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8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①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 3.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 ② 자산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③ 부채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 ⑤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그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 ⑥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 ⑦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 ⑧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채에 직접 가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채권과 채무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⑨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제9조(당좌자산)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제10조(매출채권 등의 양도) 매출채권 등을 양도(예: 할인, 배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1조(재고자산)

- ①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등을 말한다.
-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제12조(투자자산)

-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채무증권(예: 국채·공채, 회사채)과 지분증권(예: 주식, 출자금),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이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한 목적의 장기예금 등을 말한다.
- ②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제13조(유형자산)

-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 ③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4조(무형자산)

-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 ③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5조(기타비유동자산)

-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6조(유동부채)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7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는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9조(종업원급여)

- 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③ 확정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 ④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제20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지분상품(예: 주식,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 ② 지분상품 외의 자산(예: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제21조(그 밖의 충당부채)

- ① 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제8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②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연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다.
- ③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제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제22조(자본금)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제23조(자본잉여금)

- 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예: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②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제24조(자본조정)

- ①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최종적으로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에 가산·차감할 성격으로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 ②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이 포함된다.

제25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2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①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적정하게 표시한다.
- 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한다.
 -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한다.
 -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기업은 매출총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의 인식)

- ① 재화를 판매(건설형 공사계약을 포함한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② 건설형 공사계약과 용역 제공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 등이 제공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년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당기 수익은 계약금액에 회계연도 말 현재의 진행률을 적용한 누적수익에서 전기 말까지 인식한 누적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당기 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비용을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 ④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28조(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 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매출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제29조(매출액) '매출액'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및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30조(매출원가)

- ①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원가'란 판매된 재고자산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한다.

-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 ③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제31조(판매비와관리비)

- ①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 ②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 ③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 ④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하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정의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출은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제32조(영업외수익)

- ① '영업외수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 ②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3조(영업외비용)

- ① '영업외비용'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 ②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장부 및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한 비정상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유가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34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5조(자산의 평가기준)

-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재고자산의 평가)

-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 ②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장기적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3. 진부화하여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액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제37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 ⑥ 잔존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끝날 때 제3자가 그 무형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
- ⑦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⑧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 ⑨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제38조(투자자산의 평가) 시세차익만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과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설비자산 등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제39조(유가증권의 평가)

-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온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가증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은 후속적으로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가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 ⑤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제40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은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 ③ 취득 시점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이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한다.
- ⑤ 취득 시점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 등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한다.

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 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최초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제42조(파생상품의 평가)

- ① '파생상품'(예: 선물, 선도, 스왑, 옵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 1.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 2. 최초 계약 시점에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비스무리하게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3. 차액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없는 파생상품은 계약 시점 후에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결합)

- ① 기업 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③ 이전대가가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

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외화거래)

-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연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 또는 전기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달라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45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 ① 정부보조금은 다음 각 호 모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다.
- ②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의 일시적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3. 제2호 본문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 ③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 한다.

2.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④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과 유가증권의 취득 단가산정방법 변경이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 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의 예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이 있다.
- 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그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 ⑥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⑦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47조(리스거래)

- ① '리스거래'란 자산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②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하 '리스이용자'라 한다)에게 이전되

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구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 여부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 여부가 아닌 임대차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말이나 그 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해당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리스자산의 잔존가치의 합계액)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5. 리스이용자가 중요하게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④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⑤ 운용리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운용리스자산을 그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 한다.
2.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⑥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한다.

⑦ 금융리스제공자는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제5장 자본거래

제48조(주식의 발행)

- ① 주주에게서 현금을 받고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액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③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제49조(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 ①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매입 등으로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액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액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한다.
- ③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제50조(배당)

- ①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 ②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

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제51조(주식의 소각)

-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1.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2.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한다.
- ②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 ③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④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이나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6장 주식

제52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 순이익(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 가. 이익준비금
 - 나. 기타법정적립금
 - 다.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으로 하되 금전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임의적립금

마. 그 밖의 이익잉여금처분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리전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전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권장 주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3.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4. 특수관계인(법인세법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5. 이 기준에서 둘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6.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7.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이하 '정부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등의 금액,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정부보조금 등의 금액 및 해당 자산 항목
8. 해당 회계연도에 존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결제 방식(현금 또는 주식)]
9. 해당 회계연도에 보유한 파생상품의 거래 목적과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예: 계약수량, 약정환율)
10.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부 칙 (2012. X. X.)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이 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에 반영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1.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정한 항목
 - 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 다. 이익잉여금 등에 미친 영향

3) 농업회계기준(안)

-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을 기초로 농업분야의 회계처리내용을 보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제1조(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업회계처리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 ①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제1항의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적용)

- ① 이 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XX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② '농업활동'은 농어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 ③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된다.
- ④ '성숙-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
- ⑤ '미성숙-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 ⑥ '수확'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 과정의 중지를 말한다.
- ⑦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한다.
- ⑧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정으로 구성된다.
- ⑨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제6조(재무제표)

- 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같다.), 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 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 분을 작성한다.
- 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하단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제6조(재무제표)

- ① ~ ② 동일
- 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생산원가명세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하단에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제8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 ② 자산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 ② 자산(생물자산 및 수확물 포함)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동일
2. 동일
3. 자산을 자기 책임하에 통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고자산)

- ①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등을 말한다.
-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제11조(재고자산)

- ① 동일
- ②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되며, 생물자산 중 수확시점의 수확물과 성장과정 중에 있는 소비용 생물자산인 생장물이 포함된다.
- ③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산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유형자산)

-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 ③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3조(유형자산)

- ① ~ ④ 동일
- ⑤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⑥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제27조(수익의 인식)

- ① ~ ④

제27조(수익의 인식)

- ① ~ ④ 동일
- ⑤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이미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제36조(재고자산의 평가)

- ① ~ ④

제36조(재고자산의 평가)

- ① ~ ④ 동일
- ⑤ 재고자산에 속하는 성장물의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장물의 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구입가액 또는 최초 인식시점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최초 인식 이후에는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원가에 가산하여 보고기간 말의 원가로 간주한다.

- ⑥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성장 및 수확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생산원가명세서의 생산원가로 표시한다.

제37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 ③

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⑤ ~ ⑨

제37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 ⑨ 동일

⑩ 생물자산(미성숙-생물자산, 성숙-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구입가액 또는 최초 인식시점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1. 유형자산에 속하는 미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미성숙-생물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정상적인 수확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성숙-생물자산으로 인식한 이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54조(권장 주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 9
10.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제54조(권장 주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 9 동일
10.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생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 등)
11.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제55조(생산원가명세서)

1. 수확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수확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2. 당기수확물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재고금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1'과 같다.
3.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농업재무제표(안)

(별첨 1)

생 산 원 가 명 세 서

제 x 기 :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 x 기 :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회사명(농장명)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I. 재료비		
1. 기초재료재고액		
2. 당기재료매입액		
계		
3. 타계정대체액		
4. 기말재료재고액		
II. 노무비		
1. 급여		
2. 상여		
3. 잡급		
4. 퇴직급여		
III. 경비		
1. 복리후생비		
2. 종묘비		
3. 비료비		
4. 농약비		
5. 포장재료비		
6. 약품비		
7. 기타제재료비		
8. 수선유지비		
9. 수도광열비		
10. 소모품비		
11. 세금과공과		
12. 보험료		
13. 지급수수료		
14. 감가상각비		
15. 잡비		
IV. 당기총생산원가		
V. 기초생장물재고액		
VI. 합계		
VII. 기말생장물재고액		
VIII. 유형자산(또는타계정)		
대체액		
IX. 당기수확물생산원가		

(별첨 2)

재 무 상 태 표

제 x 기 : 20xx년 x월 x일 현재

제 x 기 : 20xx년 x월 x일 현재

회사명(농장명)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투자자산		
3. 매출채권		
4. 선급비용		
5. -----		
(2) 재고자산		
1. 수확물		
2. 생장물		
3. 원재료		
4. 저장품		
II.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투자부동산		
2. 장기투자증권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조합출자금		
5. 국고보조금		
(2) 유형자산		
1. 토지		
2. 설비자산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3. 생물자산-성숙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4. 생물자산-미성숙		
(3) 무형자산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컴퓨터소프트웨어		
4. 개발비		
(4) 기타 비유동자산		
1. 임차보증금		
2. -----		
자 산 총 계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부 채		
I.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2. 매입채무		
3. 미지급금		
4. 출하선수금		
5. 미지급법인세		
6. -----		
II.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3. -----		
부 채 총 계		
자 본		
I. 자본금		
1. 보통주자본금(출자금,자본금)		
2. 우선주자본금(준조합원출자금)		
II.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		
III. 자본조정		
1. 자기주식		
2. 인출금(개인농장)		
3. -----		
IV.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		
4.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이 재무상태표는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3)

손익계산서

제 x 기 :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 x 기 :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회사명(농장명)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		
1. 수확물매출		
2. 수입수수료		
3. 부산물매출		
II. 매출원가		
수확물 매출원가		
1. 기초수확물재고액		
2. 당기수확물생산원가		
3. 기말수확물재고액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 잡급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5. 임차료		
6. 접대비		
7. 감가상각비		
8. 무형자산상각비		
9. 세금과공과		
10. 연구비		
11. 광고선전비		
12. 경상개발비		
13. 대손상각비		
14. -----		
V.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VI. 영업외수익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유형자산처분이익		
4. 외환차익		
5. 외화환산이익		
6. 전기오류수정이익		
7. 국고보조금		
8. -----		
VII.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2. 외환차손		
3. 외화환산손실		
4. 유형자산처분손실		
5. 전기오류수정손실		
6. 법인세(소득세)추납액		
7. -----		
VIII. 법인세비용(소득세)차감전순 손익		
IX. 법인세비용(소득세비용)		
X.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이 손익계산서는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20xx년 x월 x일까지

처분확정일 20xx년 x월 x일 처분확정일 20xx년 x월 x일

회사명(농장명)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I. 처분전 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xxx	xxx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		
4. 중간배당액		
5.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 xx적립금	xxx	xxx
2. xx적립금		
III. 자본조정		
1. 이익준비금	xxx	xxx
2. 기타법정적립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4. 배당금		
가. 현금배당		
나. 주식배당		
5. xx적립금		
IV.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xxx	xxx

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첨 5)

결손금처리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20xx년 x월 x일까지

처분확정일 20xx년 x월 x일 처분확정일 20xx년 x월 x일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I. 미처리결손금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xxx	xxx
2. 회계정책변경 누적효과		
3. 전기오류수정		
4. 중간배당액		
5.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II. 결손금처리액	xxx	xxx
1. 임의적립금이입액		
2. 법정적립금이입액		
3. 자본잉여금이입액	xxx	xxx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개인농장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이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농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VI.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및 정책적 보급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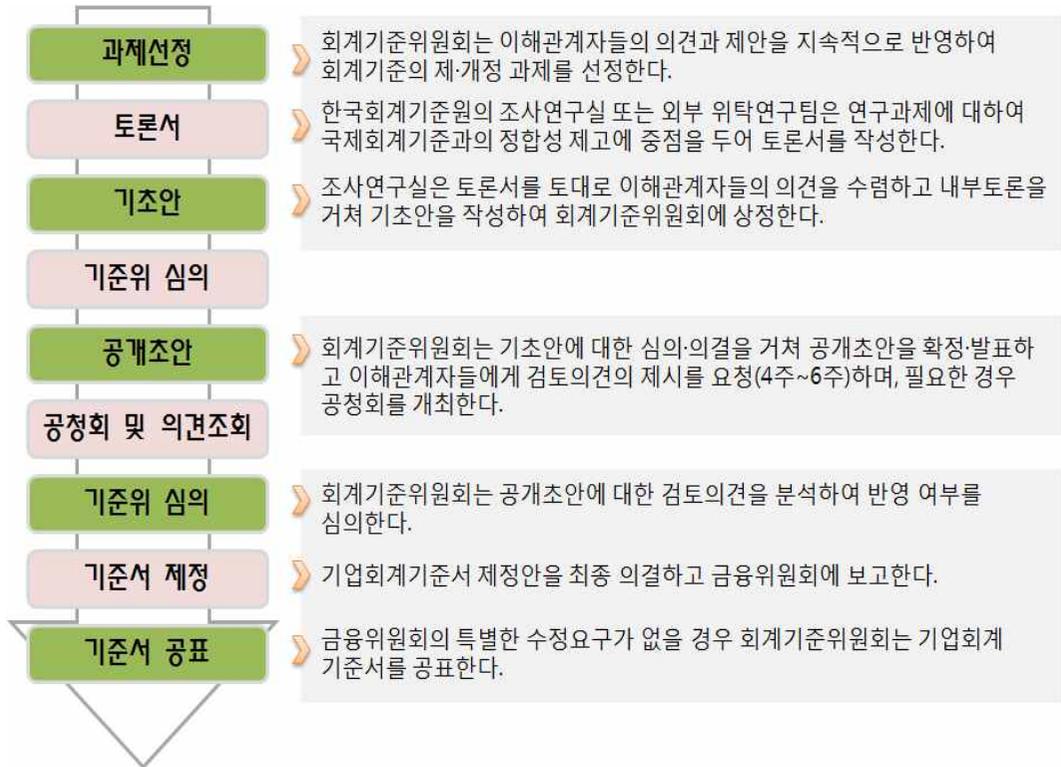
1. 농업회계기준의 제도화 필요성 및 방안 검토

가. 제도화 필요성

- ‘모범(례)’는 농업경영체가 회계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안 수준임.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 세무법인, 농업경영체 등이 농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유인이 많지 않음.
- 실제적으로 ‘모범(례)’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회계처리담당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결과적으로, 과거 농업활동 관련 회계처리는 객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여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타 분야에 비해 높지 않음.
- 비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농림어업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다루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회계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장가격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재무정보의 이용가능성, 회계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경영체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큼.
- 비농업부문에서 회계관행과 회계현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한 입장에 처해있는 농업분야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 그러나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농업활동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농업분야에서도 농업경영체가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객관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이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나아가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한 제도화 방안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과 개정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다단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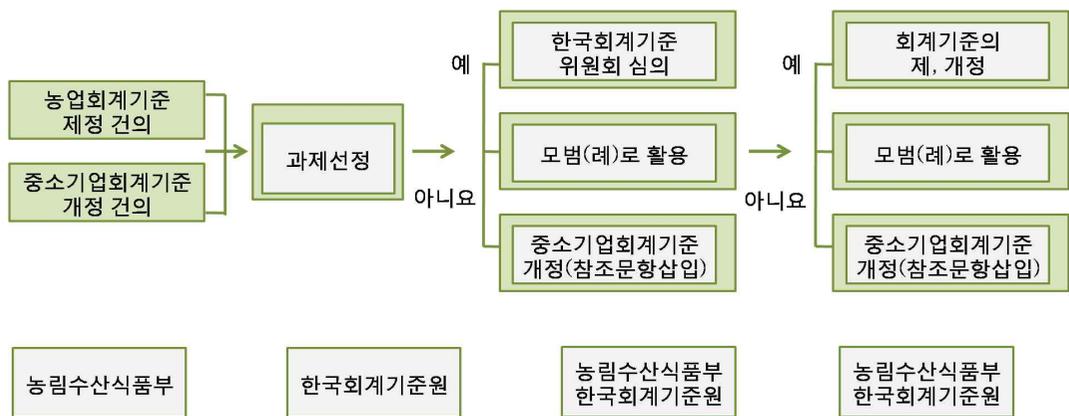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그림 2> 회계기준의 수립을 위한 절차

- 먼저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회계기준원에 농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농업회계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회계기준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그림 2>에서 제시된 절차대로 농업회계기준의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

- 만약에 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적인 활용방안(예 : 모범(례))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때 모범(례)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함으로써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주요 품목별로 회계처리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쉽게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한 회계를 제외시키고 참조문항의 삽입을 요구해야 할 것임. 참조문항은 일반회계기준보다는 농업회계처리모범(례)로 지정하여 회계처리에 있어서 농업의 회계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 이와 같은 절차는 과제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한국회계기준원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이 확정될 경우에도 농업경영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범(례)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에 보급해야 할 것임.



<그림 3> 농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

다. 권고수준(모범(례))으로 활용하는 방안

- o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농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농업회계

기준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 발간된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형태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발간될 모범(례)는 농업회계기준과 더불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포함 시킴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일괄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임. 또한 용어, 회계처리방법 등을 자세하게 서술 함으로써 해설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요 항목의 회계처리실태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킴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확보 함과 아울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농업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

- 앞서 분석한 농가의 회계기록 실태 및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 및 관련 정책을 제시함.

가. 새로운 회계기준 보급·확대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교육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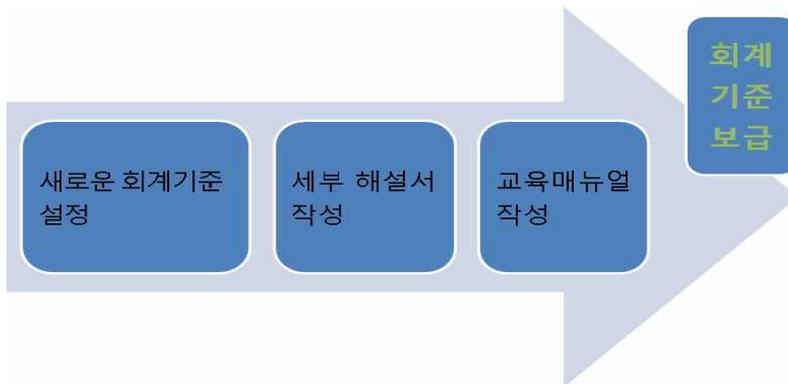
-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현 상태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에 홍보 및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우선 농업회계자료를 취급하는 모든 관련기관(금융기관, 회계법인, 농업법인 등)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회계관련 업무시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전국의 농업인 교육에서 회계관련 강의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회계관련 교육내용에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 필요
- 또한,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들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가이드라인 책자 배부 등 홍보 및 교육 필요

- 농협 등 금융기관들도 종합자금 신청 등에 제출된 농가 회계자료가 새로운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조치 권고 필요

나. 새로운 회계기준 보급·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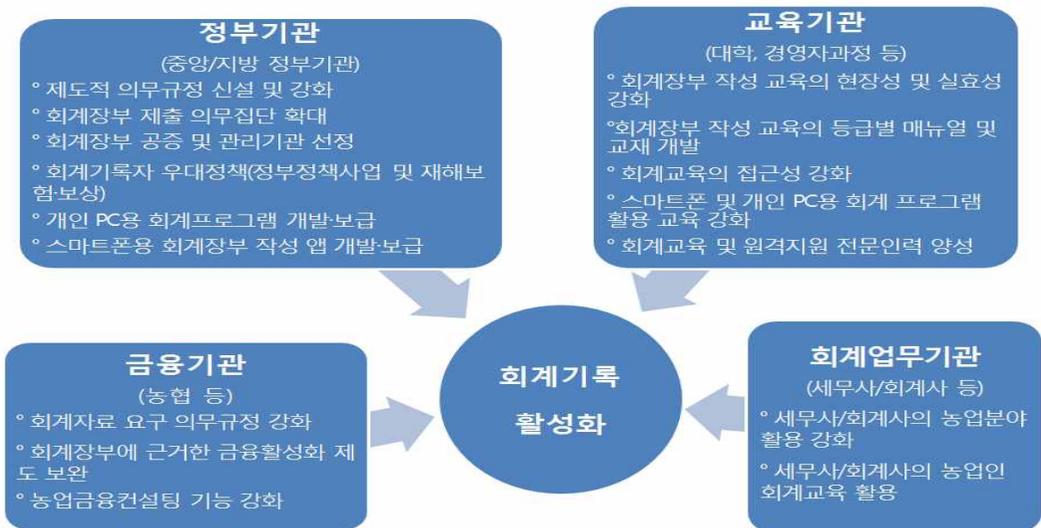
-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다음 작업으로는 금융기관, 교육기관, 세무기관 등 일선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해설서가 마련되어야 함. 축산과 경종부문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문과 세부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 효율적인 구성 방법임.
- 구체적인 세부 해설서가 마련되고 나면 새로운 기준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일선 농업인 교육용 매뉴얼이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해설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 필요. 또한, 컴퓨터 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용 매뉴얼 등 맞춤형 매뉴얼 작성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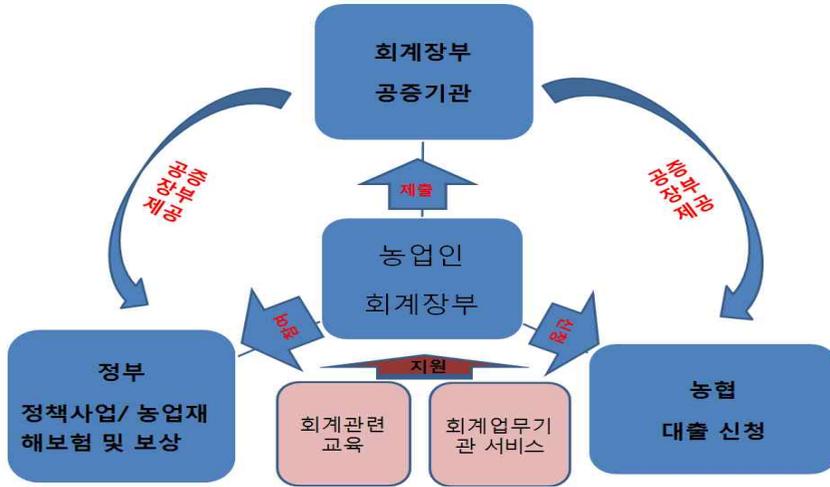
<그림 4> 회계기준 정책적 보급을 위한 후속조치

다.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이 스스로 회계 기록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회계장부 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회계기록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또는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용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실제 행동(회계기록)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무 규정’과 같은 강제적인 측면과 ‘혜택 강화’와 같은 인센티브 측면을 모두 활용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회계관련업무 기관 등에서 다각적으로 함께 공조하는 시스템(체계)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업에서 회계기록에 대한 의무규정과 회계기록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농가의 회계기록을 금융대출 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기관에서는 회계기록을 쉽고 현장감 있게 교육하고, 회계관련업무 기관에서 회계업무에 대한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그림 5> 회계기록 권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도



<그림 6> 농업인 회계장부 활용 체계도

1)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

□ 제도적 의무규정 신설 및 강화

- 현재 농업법인과 매출 3억원 이상의 축산농가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축산농가에서 매출 3억원 이상의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10%가 되지 않아 다수의 축산농가는 회계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또한 현행 소득세법(제12조제2호) 상 논밭을 이용한 작물생산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록의 의무가 없는 상태임.
- 농가들의 회계 기록 활용을 통한 경영마인드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회계 기록의 유용성을 전제로 의무적으로라도 회계기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세법을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사업 참가자 조건 등 정부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현재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산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회계장부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첨가하여야 함. 회계장부 제출의무 규정, 제출처 및 공증기관, 거

짓정보에 대한 벌칙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 등 사업자금 집행관리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규정에 명문화

- 회계장부는 농업인의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지급대상 농가의 회계장부 제출 의무화 규정 첨가 필요. 단, 회계장부가 조작되지 않도록 공증된 회계장부가 제출될 수 있도록 거짓정보 제공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가미하고 관계기관(공증기관 등)과 연계 필요

□ 회계장부 제출 의무집단 확대

- 현재 농업법인과 매출 3억원 이상의 축산농가에만 부여되어 있는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규정을 다른 부문들에도 확대 적용 필요
- 각 부문별 상위 5% 매출액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회계처리 의무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계서비스(회계기록 교육, 회계장부 작성, 회계장부 작성결과 검토서비스 등) 특별시범사업의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 필요.
- 선도농가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현재 농축산물 판매 규모별 농가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할 수 있음. 축산물의 경우 현재 법적 의무 매출액인 3억원 이상이 포함된 통계청 자료의 가장 상위그룹인 2억원 이상의 농가 규모는 전체 축산농가의 9% 수준(2011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만약, 각 부문별로 상위 5~10% 정도 그룹을 선도그룹으로 지정하고, 이들 그룹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품목별 의무대상 기준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할지, 매출액 규모(5천만원, 1억 원 등)로 할지는 부문별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각 부문의 농업인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53> 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2011년)

영농형태	수익규모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2억원 미만	2억 원 이상	계
수도작	도수	384,874	62,032	28,335	19,525	11,294	2,281	359	508,700
	비율(%)	75.7	12.2	5.6	3.8	2.2	0.4	0.1	100
식량작물	도수	78,442	5,189	2,464	2,282	1,552	573	277	90,780
	비율(%)	86.4	5.7	2.7	2.5	1.7	0.6	0.3	100
채소	도수	150,352	31,044	22,930	23,706	18,027	5,264	1,404	252,728
	비율(%)	59.5	12.3	9.1	9.4	7.1	2.1	0.6	100
특작	도수	19,205	2,301	2,011	1,665	1,856	968	450	28,455
	비율(%)	67.5	8.1	7.1	5.9	6.5	3.4	1.6	100
과수	도수	83,286	32,080	22,657	21,063	13,144	2,500	432	175,162
	비율(%)	47.5	18.3	12.9	12.0	7.5	1.4	0.2	100
약용작물	도수	5,652	1,463	528	633	378	214	112	8,980
	비율(%)	62.9	16.3	5.9	7.0	4.2	2.4	1.2	100
화훼	도수	10,813	1,795	1,721	1,853	1,654	749	515	19,099
	비율(%)	56.6	9.4	9.0	9.7	8.7	3.9	2.7	100
기타작물	도수	7,848	1,492	972	1,165	761	439	537	13,215
	비율(%)	59.4	11.3	7.4	8.8	5.8	3.3	4.1	100
축산	도수	20,455	10,065	8,021	8,374	8,109	5,146	5,922	66,091
	비율(%)	30.9	15.2	12.1	12.7	12.3	7.8	9.0	100

주) 구간 설정은 통계청에서 설정된 형태이고, 어둡게 표시된 칸은 상위 5%가 포함된 구간임.

자료 : 통계청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강구

- 농업분야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작성된 회계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제대로 작성된 재무정보는 많지 않음. 때문에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일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국세청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농업회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생물자산과 수확물에 대한 자산평가방식에는 통일된 기준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통일된 회계방식의 적용하고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세의 부과무가 없는 농업경영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임. 회계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세무사에게 기장과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일부 단순한 영농기록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임. 비록 회계기록에 노출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류나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농업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에서는 재무자료의 작성에 농업회계기준의 적용을 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공증)을 거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회계기준의 적용과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회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체감하고 회계정보에 익숙토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 법인세 및 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농업경영체의 재무정보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관행에 비춰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세무사나 지역농협의 확인(예 : 경제사업담당자-경제상무-전무)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역농협의 담당자가 회계처리업무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사업사업실태에 익숙하기 때문임. 다만, 확인과정에 대한 공신력과 그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먼저, 지역농협 및 세무사를 대상으로 농업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하고, 회계정보의 확인과정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특정기관을 회계장부 제출 및 공증기관으로 선정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에서도 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농업회계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

□ 회계기록자의 정부정책사업 참여 및 재해보험·보상 시 혜택 확대

- 회계기록은 농가경영 진단 및 전략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농가들은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정부의 회계기록 권장 정책의 효과에 의구심이 듦.
- 그러므로,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사업들에 정부의 회계기록을 권장하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정부의 정책사업 선정과 중간 검토, 사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사업 운영에서 회계기록의 중요성이 드러나야 함.
- 우선,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시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운용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예, 선정지표 평가시 회계기록 여부 및 회계지표상의 주요 항목에 가산점 확대 등)
- 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기록을 하고 있는 농가 및 공증된 회계기록 제출자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가산점 확대)도 고려 필요
- 정책사업의 중간검토 및 사후평가 지표에 회계지표상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평가해 농가들이 회계지표들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함. 물론, 이러한 평가지표는 단순히 회계자료 작성에서만 사용되는 지표가 아닌, 매출지표나 비용지표 등 경영개선에도 중요한 지표들이어야 함. 향후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들을 개발할 때 이러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 재해보험과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회계기록자를 우대하는 것은 회계기록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회계기록자(공증된 회계기록 제출자)에 보험료 요율을 조정적용하거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재해보상자 선정에서 집행에까지 최근 3개월간 회계기록에 대한 공증된 자료 제출자에 보상요율 우대 적용 방안도 고려. 재해보험과 보상에는 허위정보 제공 유인이 많으므로 공증된 회계기록 제출이 매우 중요함.

□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가조사에서는 회계기록자와 미기록자 모두 정부가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해야할 정책으로 '개인 PC용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1순위로 지적할 만큼, 농가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음.
- 현재 다양한 개인 PC용 경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이 시중에 나와 있으나, 농업분야 경영관리 및 회계 프로그램은 농협의 '알차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농가경영장부시스템' 등 몇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농협의 알차니는 매일의 농장경영장부를 수기로 기록한 다음, 한달에 한번씩 PC 프로그램(알차니)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농가경영장부시스템은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장부의 일부만 제공되는 등 최근에 오픈하여 계속 보완 중인 상태임.
- 그러나, 현재 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은 회계 미기록의 이유로 '적절한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없어서'를 두 번째로 많이 꼽았는데, 이를 볼 때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개인 PC용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몰랐거나, 알았어도 사용하기에 불편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농정원의 회계관리 시스템은 최근에 오픈된 것이기에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으나, 기본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회계지식을 전제로 회계지표 항목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측면이 많음. 그로 인해 농가가 자신의 영농 행위가 회계지표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경우 잘못된 경영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움말 기능이나 설명기능이 부족함.
- 그러므로 농업인들의 회계지식과 시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되,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기대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기존의 회계 프로그램에 회계지식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도움말 기능 및 정보입력자와 관련전문가가 컴퓨터의 화면을 함께 보면서 컨설팅해주는 원격지원 방식 등의 지원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원격

지원은 금융기관과 연계하면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충분하지 않는 한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대안적으로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같은 개발 기관과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등에 회계전담팀을 확충하면 농업인의 회계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특히, 농협의 「알차니」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호의적이니 만큼, 알차니의 장점을 최근 대대적인 개정·보완 중인이 농정원 농가경영장부시스템에 접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임. 또한 이들 프로그램이 일선 농업경영체(법인, 농업인)에서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농업경영체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 및 경영분석도 쉽게 해 볼 수 있도록 경영분석 기능과 관련 매뉴얼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음. 농가조사 결과 회계기록자나 미기록자나 모두 회계장부 작성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농정원의 농가경영장부시스템에서 생산관리를 위한 영농일지가 함께 기록되는데 입력한 회계정보를 근거로 경영분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표 54> 주요농업용 PC 프로그램

구분	특징	장점	단점
e-농장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관 : 농촌진흥청 ◦ PC용+인터넷용 ◦ 재무제표 : 현금출납장, 월별수입지출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생산일지 등 비회계적 자료 관리 가능 ◦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가능 ◦ 단식부기, 복식부기 선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단지표 사용농가가 적어 농가의 비교분석이 무의미함 ◦ 현재 입수 불가능
척척농장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관 : 농협 ◦ 재무제표 :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 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다운로드 및 사용 가능 ◦ 다양한 진단지표를 통해 경영진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불가능 ◦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성 존재 ◦ 회계 기초지식 필요

생산경영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관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재무제표 : 현금출납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등 ◦ 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 (Web 기반) ◦ 영농일지, 생산계획 등 비회계 자료 관리 가능 ◦ 기상예보, 농산물 가격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 중앙서버에 자료 자동 백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단지표가 없어 경영진단 불가능
알차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관 : 농협 ◦ 재무제표: 손익집계·현금흐름, 대차대조표, 수지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다운로드 및 사용가능 ◦ 엑셀파일이라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 가능 ◦ 수기장부와 PC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 (월 1회 PC입력) ◦ 경영진단지표별로 다양한 재무 분석 가능 ◦ 시계열 자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 수기 기록 시 일일이 거래 코드를 찾아서 기록해야 함 ◦ 프로그램 전문 담당자가 없어 농업인 교육이 어려움
태극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관 : 산천경제연구소 ◦ 재무제표 : 현금출납부, 과목별·거래처별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 ◦ 영농일지, 일정 관리 등 비회계 자료 관리 ◦ 중앙서버 자동백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 무료 사용 후 유료화 ◦ 경영진단지표가 없어 경영분석 불가능

출처: 최세현외(2011), 농업경영기록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스마트폰용 회계장부 작성 프로그램(앱) 개발 및 보급

-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긍정적으로 표시한 만큼, 생활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스마트폰을 통한 농업회계전용 프로그램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성과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더욱 보편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들을 필두로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회계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임.

- 이러한 스마트 폰의 입력정보를 개인용 PC의 농업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해 스마트폰과 개인 PC가 상호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동 프로그램도 개발 필요(예,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와 개인 PC와의 연동 시스템 응용).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연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2)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역할

□ 회계자료 요구 의무규정 강화 및 회계기록에 근거한 금융활성화 제도 보완

- 현재, 농협은행에서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개보수·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 정책자금 신청시 회계기록 제출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 유통저장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금융기관 총대출금(금차신청액 포함) 7억 원 이상인 개인은 대출신청 시 복식부기에 의한 1년 이상의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 누계(금차신청액 포함)가 3억 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 시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 회계기록(재무제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 제출해야 하며,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²¹⁾.
-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농업인들의 부채는 26,035 천원이며 차용 출처별로 농협에서 대출하고 있는 규모는 21,479 천원²²⁾으로 농가당 평균 3억원 이상을 대출하는 개인 농업인의 규모가 전체 농업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출 2억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1) 위의 내용은 농협은행 컨설팅 홈페이지에 소개된 농업종합자금에 대한 안내 중 회계기록 제출에 대한 내용임. <http://consulting.nonghyup.com/index.jsp>

22) 2012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 농업인들의 회계기록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회계기록 의무 제출이 적용되는 대출규모를 조금 더 강화(대출액 규모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럴 경우 조작된 회계기록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공증된 회계기록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보완도 필요
- 또한,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수준이 제 2 금융권의 대출규모보다 작은 것은 정책자금 대출 이후 부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농업경영체(법인, 농업인)의 공증된 회계기록에 근거한 대출의 부실화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농협에만 지우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협이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에 근거한 금융을 펼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

□ 농업금융컨설팅 기능 강화

- 농업경영체(법인, 농업인)가 받고 있는 농업컨설팅은 재배(사육)기술과 관련된 컨설팅이 대부분이고 일부 유통 등의 경제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금융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컨설팅 외에는 거의 없음.
- 현재 농협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금융컨설팅에서는 회계프로그램인 「알차니」를 제공하고 있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농업금융 분야 외부 전문가가 부족하고 농협은행내 관련부서 인력도 매우 제한적인 상태임.
- 농업금융 전문 상담사를 육성(교육하여 채용)하고 채용·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정책자금 지원 또는 수익의 일부 할당 규정 등)를 마련하여 농업금융컨설팅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3) 교육기관의 역할

□ 회계장부 작성 교육의 현장성 및 실효성 강화

- 농업인 조사결과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받은 회계관련 교육이 만족도는 높더라도 실제적인 행동(회계기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향후 회계관련 교육은 회계장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우선, 회계교육의 학습목표를 실효성에 바탕을 둔 목표로 설정해야 함. 회계교육의 목적은 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개인용 PC 등을 통해 회계장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두어야 함. 특히,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련 회계교육을 이수한 후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타인이 대신해 주는 다른 방법들보다 선호하고 있는 점을 비취볼 때 이러한 학습목표 설정은 타당함.
- 이러한 학습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강구해야 함. 구체적으로 이론교육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작성 등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집단교육보다는 개별교육을 강조해야 함. 회계교육의 실습교육 때, 회계를 잘 아는 보조원을 활용하여 개별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필요.
- 특히, 회계작성 우수 사례 농가를 향후 사례발표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회계기록 및 관련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에 활용하고, 이들을 회계 관련 교육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 강화

□ 회계 지식 및 회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 정도를 고려한 등급별 회계장부 작성 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 회계에 대한 개념 교육과 회계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회계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회계지식과 회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략적 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필요
- 회계에 대한 기초개념과 회계장부 작성 방법, 회계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보자용, 회계 개념 및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프로그램 활용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중급, 회계 개념을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다른 용도(경영 계획, 정책자금 신청 등)로 활용하는 고급 수준으로 구분한 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필요. 이러한 등급 구분은 관련 교육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음.

□ 지역 인근 대학 및 관련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회계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적으로 인근 대학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이나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면, 농업인들의 회계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지역 인근 대학을 활용할 경우 대학내 회계학이나 경영학 관련 학생들을 보조원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들 교육과정에는 한우반, 사과반, 포도반, 인삼반, 시설채소반 등 공동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생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스마트폰 및 개인 PC 용 회계 프로그램 활용 교육 강화

-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상에 사용하는 스마트 폰이나 개인 PC용 회계 프로그램이 조만간 개발될 예정인바, 이를 활용하는 법(스마트폰을 이용한 회계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과 개인 PC용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회계기록의 일상화에 도움이 됨. 이때, 관련된 기본적인 방식들이 간단하고 익히기 쉽도록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이러한 가정용 PC를 이용한 회계장부 작성 방법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교육되면 회계기록의 현장성과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회계 현장교육 및 온라인 원격지원을 담당할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앞서 제기한 회계관련 개인용 PC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 및 원격지원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별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해 담당지역의 농업인들의 회계교육 및 지원에 활용하는 것 필요. 지역별 회계작성 우수 사례 농가들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다른 농업인들에 대한 자문 및 신규 귀농인들에 대한 자문 등에 활용

- 이러한 회계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근지역 대학이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 필요

4) 회계업무기관의 역할

□ 회계업무기관인 세무사/회계사의 농업분야 활용 강화

-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들이 관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영농활동이나 경영개선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으나, 실제로 농업분야 회계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농업경영컨설팅에 활용하는 정도는 매우 미흡함.
- 소, 돼지, 닭 등 특정 가축이나 과수, 화훼, 채소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대표적인 회계법인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농업인들이 회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
- 물론, 이들 회계사/세무사들이 농업을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 세무사/회계사의 농업인 회계교육 활용

- 이들 회계법인들에 종사하는 회계사/세무사 등을 농업인 관련교육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정규과정 중 일부 특별강좌의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이들 회계법인들은 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참여할 유인이 적은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강구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 예를 들어 특정 액수 이상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회계업무를 대행할 경우 농업인 관련교육과정(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등)의 일정시간 특별강사 활동을 요구하는 등의 제도 마련 필요(이 부분은 회계법인들의 의견을 통한 조정 필요). 이러한 특별 강사 활동은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법인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님.

라. 농업분야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 필요

- 농업인의 회계장부 기록 및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행동지침(action plan)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행동지침은 의무규정과 같은 강제사항과 가산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특히,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1) 농업인의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해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법안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개정할지, 개정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효과(저항 포함)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2) 농업인의 회계장부 제출 의무집단으로 선정할 부문별 선도농가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 5% 수준이 적절한지, 5% 수준이 전체 농업인의 구성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 축산 외에 농업의 다양한 부문별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에서는 관련부문의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함.
- 3) 농업인이 제출할 회계장부에 대한 공증을 해줄 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기존의 유관기관들(농협, 농수산업자신용기금,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등)을 활용(기능 확대)할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느 기관으로 선정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공증된 회계장부의 관리와 유관기관 간 활용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4) 회계기록자의 정부정책사업 참여시 부여하는 혜택 강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회계기록자의 재해보험 및 재해보상 시 부여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5) 농업인의 회계지식과 회계 프로그램 활용 능력별 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 함. 교육의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교재와 관련 교육 매뉴얼 개발 연구는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임.

참고문헌

- 권오욱, “축산회계의 계정과목 설정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19(2):77-91, 1992.
- 권오욱외, 「농업회계」, 선진문화사, 1998.
- 김정주, 「농업경영 회계처리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2004.
- 김태용외,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미래회계법인, 2004.12.
- 노미현, “농업회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검토와 비교 연구”, 「국제경상연구」, 5(4):105-128, 2008.
- 농림부, 「농장회계길라잡이(농업회계처리모범(례)해설)」, 2007.
- 농림수산정보원, “농가경영장부시스템”, 2011.
- 농촌진흥청, 「2009 농업과학기술개발 경제성분석 기준자료집」, 2009.
- 농협중앙회, “농협 회계규정 제4조”, 2010. (2012. 10. 13. 현재)
- 농협중앙회, “알차니2007”, 2007.
- 농협중앙회, 「회계업무방법」, 2011.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2007 농업종합자금대출업무가이드」, 2007.
- 대한민국국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법제처, 2009. (2012. 10. 13. 현재)
- 대한민국국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제처, 2011. (2012. 10. 13. 현재)
- 대한민국국회, “법인세법 제60조”, 법제처, 2011. (2012. 10. 13. 현재)
- 박승용외, 「경영기록장」, 농촌진흥청, 2012.
- 변규섭외, 「농업경제 학도를 위한 회계학」, 향문사, 2001.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회계규정 제135조”, 2010. (2012. 10. 13. 현재)
- 소순열 외, 「농업경영 기록 및 진단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2007.

- 수협중앙회, “수협 회계규정 제5조의 2 제2항”, 2010. (2012. 10. 13. 현재)
- 수협중앙회, “푸른아라 2009”, 2009.
- 신해식, 「농업회계학」, 강원대출판부, 2011.
- 양병우·이영만, “농업경영조직과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소고”, 「농업생명과학연구」, 39(2):21-28, 2005.
- 이승형, “농업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29:142-152, 1998.
- 이영만, “농업경영분석을 위한 농업부기이용의 한계”, 「농업경영·정책연구」, 29(4):612-626, 2002.12.
- 이영만, “농업회계기준의 표준화 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30(2):270-283, 2003.6.
- 이영만, “농업부기 및 회계체계의 설정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1(4):634-639. 2004.12.
- 이희숙외, “소규모 농가의 영농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재무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현”,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 13(1):149-166, 2006.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통계」, 2012.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07.
- 최세현외, 「농업경영기록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012.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27장.
- 한두봉·서상택, “농업재무제표에 관한 소고”, 「생명자원연구」, 9:77-87, 2001.

<부록> 회계처리방법 상세 비교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목적</p> <p>27.1 이 절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p>	<p>제1조(목적)</p> <p>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제2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목적</p> <p>1.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이하 ‘모범(례)’라 한다)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목적</p> <p>1. 농업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 기준’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p>
<p>적용범위</p> <p>27.2 이 절은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1) 생물자산 (2) 수확시점의 수확물 (3) 문단 27.14와 27.1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p> <p>27.3 이 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제10장 ‘유형자산’ 참조)</p>	<p>제2조(적용)</p> <p>①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② 이 기준은 제1항의 회사가 아닌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주</p>	<p>적용범위</p> <p>2. 이 모범(례)는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 중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자산 및 수확시점의 생산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적용범위</p> <p>2. 이 회계기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자산 및 수확시점의 수확물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2)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 자산(제11장 ‘무형자산’ 참조)</p> <p>적용</p> <p>1.3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p> <p>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p> <p>5.3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p>	<p>식회사를 제외한다)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p> <p>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조(회계정책의 선택)</p> <p>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p>	<p>3. 이 모범(례)에서 구체적으로 정</p>	<p>3. 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p> <p>* 중소기업회계기준서(공개초안)</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폐)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p> <p>(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p> <p>(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p> <p>(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p> <p>(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p> <p>(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p> <p>(라) 신중하게 고려한다.</p> <p>(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p> <p>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p>		<p>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p>	<p>가 확정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함.</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p> <p>(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p> <p>(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p> <p>(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p> <p>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p>			
<p>용어의 정의</p>	<p>명시적 규정 없음</p>	<p>4. 이 모범(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가)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p>	<p>4. 이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가)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농</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p> <p>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p> <p>수확 :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 과정의 중지</p> <p>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p>		<p>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나) ‘농업활동’은 농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p>	<p>(어)업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나) 농업활동은 농업경영체가 생물자산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p> <p>(라) ‘성숙 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p> <p>(마) ‘미성숙 생물자산’은 내구연수 1년 이상의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정상적인 생산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을 말한다.</p> <p>(바) ‘수확’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 과정의 중지를 말한다.</p> <p>(사)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한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p> <p>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p> <p>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2)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3)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p>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p>		<p>(다)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됨.</p> <p>(라)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생물자산 자체로서 판매 가능한 수확물을 말한다.</p> <p>(마) ‘형질변환’은 생물자산의 생산, 성장, 퇴화 등과 같은 질적·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p>	<p>(다)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사용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된다.</p> <p>(아)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정으로 구성된다.</p> <p>(자)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p> <p>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p>		<p>(바)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p>	
<p>재고자산의 정의</p> <p>7.3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p>	<p>제10조(재고자산)</p> <p>①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p>	<p>생물자산의 계정과목 분류</p> <p>재고자산</p> <p>11. 수확시점 후의 생산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p> <p>12.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p>	<p>생물자산의 계정과목 분류</p> <p>재고자산</p> <p>7. 수확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p> <p>8. 개념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생산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p> <p>9.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이 성</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장중인 경우에는 ‘생장물’로 처리하고 수확시점에는 ‘수확물’로 표시한다.
<p>유형자산의 정의</p> <p>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p>	<p>제12조(유형자산)</p> <p>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p>	<p>유형자산</p> <p>9.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p> <p>10.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장 중인 생물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p>	<p>유형자산</p> <p>5. 생물자산을 생산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되,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p> <p>6.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생물자산-성숙’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재배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생물자산-미성숙’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되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p>
<p>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p> <p>27.4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p>	<p>제7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p> <p>③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p>	<p>생물자산 및 생산물의 자산인식</p>	<p>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자산인식과 측정</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 나 수확물을 인식한다.</p> <p>(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p> <p>(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 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p> <p>(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 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 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 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 한다.</p> <p>④ 자산은,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 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p>	<p>5.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아래 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p> <p>(가) 과거 농업활동 또는 거래 등 의 결과로 취득한 생물자산 또 는 생산물을 자기책임하에 처 분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p> <p>(나)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p> <p>(다)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10.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은 아래 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p> <p>(가) 과거 농업활동 또는 거래 등 의 결과로 취득한 생물자산 또 는 수확물을 자기책임하에 통 제할 수 있어야 한다.</p> <p>(나)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 능성이 높다.</p> <p>(다)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원가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다.</p>
<p>최초인식시점의 측정</p> <p>27.5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 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 된다.</p> <p>27.6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p>	<p>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p> <p>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 식한다.</p> <p>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 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p>	<p>생물자산 및 생산물의 자산인식</p> <p>6.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은 수확 시점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형 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의 현금유입액을 측정하기 어 려우므로 취득원가로 측정한다.</p>	<p>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자산인식 과 측정</p> <p>11. 생물자산(유형자산(미성숙 생 물자산, 성숙 생물자산), 재고자 산(생장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한다. 다만,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제7장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한편,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p>	<p>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p>7.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p> <p>생물자산의 취득원가</p> <p>14. 생물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매입가액에 성장기간 동안 생산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p> <p>15. 성중중인 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p>	<p>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구입가액 또는 최초 인식시점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p> <p>(가) 유형자산에 속하는 미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p> <p>(나)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정상적인 수확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성숙-생물자산으</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폐)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생물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생산물의 생산원가에 삽입한다.</p>	<p>로 인식한 이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p> <p>(리) 재고자산에 속하는 성장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p> <p>12.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이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성장 및 수확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생산원가명세서의 생산원가로 표시한다.</p>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제33조(재고자산의 평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27.7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후 문단 27.8~27.12에 의한 순공정가치법과 문단 27.13에 의한 원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생물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p> <p>순공정가치법</p> <p>27.8 생물자산에 대하여 순공정가치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를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p> <p>27.9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한다.</p> <p>(1)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 가격</p> <p>(2)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p>	<p>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p> <p>②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 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p> <p>③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다.</p> <p>④ 재고자산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하여 판매가격이</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3) 수출용 상자, 부셀이나 헥타르 단위로 표시되는 과수의 가치, 그리고 정육의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소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p> <p>27.10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순현금흐름을 현행시장결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구한다.</p> <p>27.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p> <p>(1)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과수 묘목)</p> <p>(2)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예: 소나무조립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p>	<p>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p> <p>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p> <p>제34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p> <p>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자급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음 단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p> <p>27.12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p> <p>원가법</p> <p>27.13 최초인식 이후 생물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생물자산에 대하여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p>	<p>할 수 있다.</p> <p>③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이하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p> <p>④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p> <p>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p> <p>2. 무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 data-bbox="757 328 808 355">금액</p> <p data-bbox="689 403 1104 627">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p> <p data-bbox="689 671 1104 815">⑥ 잔존가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p> <ol data-bbox="701 863 1104 1318"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제 1호를 준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⑦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p> <p>⑧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p> <p>1.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p> <p>2. 무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p> <p>⑨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p>		
<p>정부보조금</p> <p>27.1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p> <p>27.1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p>	<p>제47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p> <p>①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p> <p>②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회폐성자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p>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p> <p>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및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 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p> <p>③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2.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p> <p>④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정부 보조금 회계처리 규정을 준용한다.</p>		
<p>주석공시</p> <p>27.16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생물자산집단별 내역</p> <p>(2) 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p> <p>(3) 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p> <p>(4)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p> <p>27.17 생물자산을 원가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생물자산 집단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감가상각방법</p>	<p>농림어업에 특정된 주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권장 주석</p> <p>18. 재무제표의 작성 시 농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p> <p>19.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구체적인 종류, 수량 및 장부금액은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예상판매금액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2)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3)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p> <p>27.18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p> <p>(1) 수확시점의 수확물집단별 공정가치와 생물자산집단별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p> <p>(2)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p> <p>27.19 문단 27.16(4)의 변동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p> <p>(2) 매입에 따른 증가</p> <p>(3) 판매에 따른 감소</p> <p>(4) 수확에 따른 감소</p> <p>(5) 사업결합에 따른 증가</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예)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6)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의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의환차이</p> <p>(7) 감가상각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p> <p>(8) 그 밖의 변동</p>			
<p>재무제표</p> <p>2.4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p>	<p>제5조(재무제표)</p> <p>①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와 같다. 이하 같다), 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p> <p>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 분을 작성한다.</p> <p>③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하단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p>	<p>재무제표</p> <p>19.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p>	<p>재무제표</p> <p>1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재무제표의 양식은 ‘별첨 2’와 같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재무제표의 양식은 ‘별첨 2’와 같다.</p> <p>생산원가명세서</p> <p>16. 생산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생산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p>	<p>생산원가명세서</p> <p>14. 수확물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수확물의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p> <p>15. 당기수확물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 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1’과 같다.</p> <p>16.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17. 당기생산물생산원가는 재 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 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 원가에서 기초생장물재고금 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 재고액과 타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 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첨 1’과 같다.</p> <p>18.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및</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p> <p>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p>	
<p>재화의 판매</p> <p>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p> <p>(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p> <p>(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p> <p>(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p> <p>(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제24조(수익의 인식)</p> <p>① 재화를 판매(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p> <p>제25조(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p>	<p>생물자산과 생산물의 수익인식</p> <p>8.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p> <p>(가)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수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p> <p>(나) 판매자는 이미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권이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라) 경제적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p> <p>(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p>	<p>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수익인식</p> <p>13.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p> <p>(가)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p> <p>(나) 판매자는 판매한 생물자산 또는 수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p> <p>(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p>(라)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p> <p>(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p>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안)	농업회계처리모범(례)	“농업회계처리기준(안)
		<p>있다.</p> <p>위의 조건을 일반적으로 충족시키는 시기는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의 인도시점으로 볼 수 있다.</p>	